

---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

2013. 10

◀ 목 차 ▶

- I. 고용률 70%의 의미와 OECD 달성 사례
- II. 고용률 70% 달성 전후 상황과 노동시장 개혁
- III. 노동시장 개혁 정책 이후의 변화와 성과
- IV. 고용률 70% 달성국가, 개혁과 성과의 시사점

# 목 차

요약 .....	i
<b>I. 고용률 70%의 의미와 OECD 달성 사례 .....</b>	<b>1</b>
1. 고용률 70%의 의미 .....	1
2. 단기간(5년) 내 고용률 70%를 달성한 OECD 사례 .....	7
<b>II. 고용률 70% 달성 전후 상황과 노동시장 개혁 .....</b>	<b>12</b>
1. 독 일 .....	12
2. 네덜란드 .....	14
3. 영 국 .....	17
4. 그 외 국가(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	20
<b>III. 노동시장 개혁 정책 이후의 변화와 성과 .....</b>	<b>27</b>
1. 개 괄 .....	27
2. 국가별 노동시장 변화 분석 .....	30
① 독 일 .....	30
② 네덜란드 .....	34
③ 영 국 .....	37
④ 그 외 국가(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	40
<b>IV. 고용률 70% 달성 국가, 개혁과 성과의 시사점 .....</b>	<b>44</b>

## 요 약

-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추격형 성장단계 종료 등이 맞물리면서 장기적인 '저성장-저고용 시대'에 직면
- 하지만, 경직적인 노동시장, 남성 중심의 외별이 고용구조, 일자리 미스매치 등으로 야기된 노동시장의 만성적인 경색(梗塞)으로 인해 경제 내 존재하는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과도한 노동시장 경직성은 경제주체의 노동시장 진출입을 제약하면서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 및 자영업 공급과잉을 야기
  -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은 남성 전일제 정규직 중심의 편향된 노동공급을 유발함으로써 '고임금-장시간근로-저고용' 초래
- 더욱이,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는 소득불평등 및 빈곤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갈등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 자영업자 가구가 상용근로자 가구보다, 외별이 가구가 맞별이 가구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각각 약 3배 높게 나타남.
    - ※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비중)
      - 자영업자 가구 13.1%, 상용근로자 가구 4.4% ; 외별이 가구 3.9%, 맞별이 가구 11.5%
- 이에 저성장구조의 고착화와 기존 노동시장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를 목표로 한 새로운 노동시장 패러다임 구축이 시급
  - 이에 단기간(5년) 내 고용률 70% 달성을 경험한 OECD 국가들의 노동시장 개혁 사례와 노동시장 변화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 5년내 고용률 70%를 달성한 OECD국가

※ 이하의 모든 고용지표는 15~64세 기준 OECD 통계 활용

○ 1970년 이후 고용률 70%를 하회하다 이를 넘어선 경험이 있는 OECD국가는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총 11개국

- 고용률 70% 달성시 5년내 고용률 5%p 이상 상승을 경험한 국가(총 7개국)

: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노르웨이

- 고용률 70% 달성시 5년내 고용률 5%p 미만 상승을 경험한 국가(총 4개국)

: 호주, 오스트리아, 일본, 핀란드

※ 캐나다는 1970년 이후 고용률 70%를 하회하다 이를 넘어선 경험이 2번(1988, 1999년) 있었으며, 이하에서는 70% 달성 전 5년간 6.3%p 올랐던 시기(1983~1988년)를 기준으로 분석

○ 우리나라가 2017년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5.8%p(2012년 기준 고용률 64.2%)를 제고시켜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고용률이 5년내 5%p 이상 상승한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총 6개국의 노동시장 분석

< 참고 1 > 고용률 70% 달성 국가 중 노르웨이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 노르웨이가 고용률 70%를 하회하다 이를 넘어선 시점은 1980년(72.2%)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70%를 상회

※ 1970년대 후반 노르웨이의 실업률과 고용률(15~64세, %)


- 고용률 : ('75) 65.0 ('76) 67.6 ('77) 68.5 ('78) 69.1 ('79) 69.6 ('80) 72.2

- 실업률 : ('75) 2.3 ('76) 1.8 ('77) 1.5 ('78) 2.0 ('79) 2.0 ('80) 1.7

○ 분석대상에서 노르웨이를 제외한 이유는 ▲ 대상기간이 1970년대(1975~1980년)로 약 40년이 경과한 사례이고, ▲ 1970년대 노르웨이 노동시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低실업-高고용' 상황에 처하게 된 주요원인이 북해유전 개발\*이라는 공급측 요인에 있으므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현실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임.

\* 1969년 북해 유전 발견, 1971년 석유 생산 시작, 1975년 석유와 가스 순수출국으로 전환

■ 고용률 70% 달성 전 5년간 고용률 5%p 이상 상승을 경험한 6개국의 노동시장 개혁정책 및 고용성과 개괄

국 가	70% 달성시점 (고용률 변화)	노동시장 개혁 정책	5년간 고용성과
독 일 	2003~2008 64.6% → 7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아젠다2010, 하르츠개혁 등(200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고규제 완화</li> <li>-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규제 완화</li> <li>- 미니잡, 미디잡 등 저임금 일자리 지원 확대</li> <li>- 고용서비스 규제 완화 및 효율화</li> <li>- 실업보험 수급요건 강화 등 사회보장체계 개편</li> <li>-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률 : 5.6%p ↑</li> <li>- 실업률 : 1.8%p ↓</li> <li>- 취업자수 : 258만명 ↑</li> <li>- 실업자수 : 53만명 ↓</li> </ul>
네덜란드 	1994~1999 63.9% → 7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비세나르협약, 신노선협약 등 노사정합의(198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 임금인상 자제 근로자 사회보장부담 확대 등</li> <li>- (사) 30시간 미만 시간제 고용 활성화 직업훈련 강화, 근로시간 단축 등</li> <li>- (정) 재정지출 축소, 법인세·소득세 부담 완화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률 : 6.9%p ↑</li> <li>- 실업률 : 3.1%p ↓</li> <li>- 취업자수 : 86만명 ↑</li> <li>- 실업자수 : 21만명 ↓</li> </ul>
영 국 	1984~1989 65.9% → 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처리즘(1979~199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조합의 합법적 파업범위 축소 등 노조 개혁</li> <li>- 해고규제 완화 및 임금유연성 제고</li> <li>-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li> <li>-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li> <li>- 수급자격 엄격화, 수급액 축소 등 실업보험 개편</li> <li>- 고용보조금 및 고용서비스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li> <li>- 사업주 중심의 직업훈련제도 구축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률 : 6.1%p ↑</li> <li>- 실업률 : 4.7%p ↓</li> <li>- 취업자수 : 258만명 ↑</li> <li>- 실업자수 : 114만명 ↓</li> </ul>
미 국 	1982~1987 65.8% → 7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레이저노믹스(1981~1989)</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li> <li>- 공공사업 규제 정비 및 신규업체 시장 진입 허용</li> <li>- 공정거래법 범위 축소</li> <li>- 안전·환경 관련 규제 축소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률 : 5.0%p ↑</li> <li>- 실업률 : 3.6%p ↓</li> <li>- 취업자수 : 1,279만명 ↑</li> <li>- 실업자수 : 322만명 ↓</li> </ul>
뉴질랜드 	1991~1996 65.3% → 7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경제구조개혁(1980~90년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투자, 금융 등 경제 전반의 규제 완화</li> <li>-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등</li> <li>- 수급자격 엄격화, 수급액 축소 등 실업보험 개편</li> <li>- 정부지출 삭감, 국영기업 민영화 등</li> </ul> </li> <li>● <b>고용계약법 제정(199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조합 의무가입규정 폐지</li> <li>- 산업별·직종별 파업 금지</li> <li>- 노동조합의 독점적 교섭권 폐지</li> <li>- 단체협약의 포괄적용 폐지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률 : 5.4%p ↑</li> <li>- 실업률 : 4.3%p ↓</li> <li>- 취업자수 : 23만명 ↑</li> <li>- 실업자수 : 6만명 ↓</li> </ul>
캐 나 다 	1983~1988 63.7% → 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경제회생아젠다(1984)</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출 삭감</li> <li>- 적극적 일자리창출 정책</li> <li>- 선별주의적 사회보장프로그램 확대</li> </ul> </li> <li>● 수급자격 엄격화, 수급액 축소 등 실업보험 개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률 : 6.3%p ↑</li> <li>- 실업률 : 4.4%p ↓</li> <li>- 취업자수 : 168만명 ↑</li> <li>- 실업자수 : 44만명 ↓</li> </ul>

## ■ 70% 달성 전 5년간 세부형태별 고용증감 분석

- (개 팔) 5년 내 고용률을 5%p 이상 끌어올려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진국의 고용 증가는 시간제·임시직, 여성, 24~54세 연령층 취업자 증가가 견인
- (전일제·시간제\*) 6개국에서 전일제, 시간제 근로자가 모두 증가했으며, 미국을 제외한 5개국에서 시간제 근로자 증가율이 전일제 근로자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시간제 근로자가 5년 동안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승

\* OECD는 시간제를 주된 일자리(the main job)에서 주당 30시간 미만 근로하는 형태로 정의

- 고용률 70% 달성 이전 노동시장 유연성이 이미 OECD 최고 수준이었던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OECD 정규직 고용보호법제지수 순위(순위가 높을수록 보호수준이 낮음)

: 미국 1위(1985년), 캐나다 2위(1985년) ; 독일 24위(2005년), 네덜란드 24위(1995년)

< 표 1 > 고용률 70% 달성 전 5년간 취업자수, 전일제·시간제 근로자수 증감

(단위 : 천명)

구 분	분석기간	취업자수 증감(률) < A >	전일제 근로자 증감(율)	시간제 근로자 증감(율) < B >	시간제근로자 고용기여도 < B/A*100 >	시간제근로자 비중 변화 (전체취업자수 대비)
독 일	2003~2008	2,581 (7.3%)	994 (3.8%)	1,079 (17.4%)	41.8%	17.5% → 19.2%
네덜란드	1994~1999	858 (12.8%)	456 (9.8%)	395 (23.8%)	46.0%	24.8% → 27.2%
영 국	1984~1989	2,577 (10.9%)	1,328 (7.4%)	605 (15.3%)	23.5%	16.7% → 17.4%
미 국	1982~1987	12,793 (13.2%)	10,174 (14.2%)	1,032 (8.5%)	8.1%	12.6% → 12.1%
뉴질랜드	1991~1996	227 (15.2%)	120 (12.8%)	56 (23.5%)	24.7%	16.1% → 17.2%
캐 나 다	1983~1988	1,678 (15.5%)	1,198 (15.2%)	267 (18.0%)	15.9%	13.6% → 13.9%

주1 :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임금근로자 기준

주2 : 고용기여도는 분석대상기간동안 전체취업자 증가분에서 시간제 취업자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OECD

○ (상용직·임시직) 독일, 네덜란드는 상용직과 임시직 모두 증가했으며, 전체 취업자수에서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중 상승

- 영국은 상용직이 증가하고 임시직이 감소, 그 외 국가는 분석대상기간 데이터 부재

※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임시직 비중 변화

- [독 일] 상용직 : ('03) 78.0% → ('08) 75.4%, 임시직 : ('03) 10.9% → ('08) 13.1%
- [네덜란드] 상용직 : ('94) 78.1% → ('99) 78.3%, 임시직 : ('94) 9.4% → ('99) 10.6%
- [영 국] 상용직 : ('84) 71.6% → ('89) 71.7%, 임시직 : ('84) 5.0% → ('89) 4.1%

< 표 2 > 고용률 70% 달성 전 5년간 취업자수, 상용직·임시직 근로자수 증감

(단위 : 천명)

구 분	분석기간	취업자수 증감(률) < A >	상용직 근로자 증감(율)	임시직 근로자 증감(율) < B >	임시직근로자 고용기여도 < B/A*100 >	임시직근로자 비중 변화 (전체취업자수 대비)
독 일	2003~2008	2,581 (7.3%)	1,060 (3.8%)	1,121 (29.1%)	43.4%	10.9% → 13.1%
네덜란드	1994~1999	858 (12.8%)	689 (13.2%)	167 (26.4%)	19.4%	9.4% → 10.6%
영 국	1984~1989	2,577 (10.9%)	1,858 (11.0%)	-98 (-8.4%)	-3.8%	5.0% → 4.1%

주1 :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는 임금근로자 기준

주2 : 고용기여도는 분석대상기간동안 전체 취업자 증가분에서 임시직 취업자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OECD

< 참고 2 > OECD 임시직 근로자와 우리나라 비정규직 분류방식

○ (OECD)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통상 임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나라지표, 비정규직의 개념 및 정의)

- 임시직근로자는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

○ (우리나라) 2002.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을 고려한 비정규직 분류기준에 합의

-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 시간제 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비전형근로자) 등이 해당

① (한시적근로자, 고용의 지속성)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② (시간제근로자,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③ (비전형근로자, 근로제공 방식) 파견·용역 근로자, 특수고용 종사자, 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 일일(호출)근로자

- OECD 임시직 근로자와 달리 '고용의 한시성'에 의한 분류가 아니므로 용역, 특고, 가정내 근로까지 비정규직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모든 시간제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구분



- ④ 투자 활성화 및 근로 유인을 위한 법인세, 소득세 등 세부담 경감
- ⑤ 실업보험 수혜조건 강화, 수급액 축소, 실업자의 구직노력의무 강화 등 실업 보험체계 개편
- ⑥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고용서비스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 고용률 70% 달성 전 5년간 노동시장 변화는 주로 노동시장 개혁이 일자리의 '질(Quality)'과 '양(Quantity)'을 모두 늘려 핵심근로인구(25~54세)는 물론 청년층, 여성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음을 방증

- 고용률 70% 달성 전 5년간 6개국의 노동시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① 전일제·시간제 근로자수가 모두 증가했으며, 시간제 근로자 증가가 고용률 상승을 견인하면서 시간제 근로자의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상승
- ② 남성과 여성 취업자수가 모두 증가했으며, 여성 취업자의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상승
- ③ 청년층(15~24세), 핵심근로인구(25~54세) 장년층(55~64세) 취업자수가 모두 증가하고, 핵심근로인구(25~54세) 취업자수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나면서 고용률 증가 견인

■ 노동시장 개혁 정책과 성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노동시장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① 경제 전체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투자 확대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특히,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인 고용률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정규직 일자리를 나눠갖는 '제살꺾이먹기(Cannibalization)\*'식이 아니라 기존 인력수요와 관계없이 새로운 일자리, 즉 창조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자기시장 잠식이라고도 하며, 한 기업에서 새로 출시하는 상품으로 인해 그 기업에서 기존에 판매하던 다른 상품의 판매량이나 수익,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

- ②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해고보호 완화, 고용형태 및 생산방식 다양화 등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해야 함.

- ③ 정규직 일자리에 비해 고용보호가 약한 비정규직 일자리는 기존 근로자들보다 근로능력이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통로로 작용하므로 비정규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함.
- ④ 5년내 고용률 70% 달성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고용형태를 인위적으로 제약하기보다는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효율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활성화가 핵심요소이나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를 부여할 경우 오히려 고용률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음.
- ⑤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은 근로시간 감소로 이어질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법제도 중심의 접근보다는 노동시장 유연화, 생산성 향상 등 시장기능에 중점을 둔 접근이 필요함.
- ⑥ 개별기업의 노사문제는 노사간 자율적 교섭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정부는 '중립적 법집행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형성해야 함.
- ⑦ 비경제활동 상태인 핵심근로인구와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제고시킴으로써 고용률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부담 경감, 근로 연계 복지 구축이 시급함.

<참고 3> 고용률 70% 달성시 5년내 고용률 5%p 이상 상승을 경험한 국가의 노동시장 개혁

**① 독 일**

- 고용률 70% 달성 시점(2003~2008년) : 2008년 고용률은 70.2%로 2003년 대비 5.6%p 상승, 실업률은 7.6%로 2003년 대비 1.8%p 하락
  - ⇒ 2003~2008년 5년간 취업자수는 258만명(7.3%) 증가, 실업자수는 53만명(14.4%) 감소
- 노동시장 개혁정책 : Agenda2010, 하르츠개혁 등(2003~)
  - 2003년 아젠다2010, 하르츠 개혁을 통해 해고보호법제 완화, 비정규직 규제 완화, 근로 연계 복지 강화 등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 시행
  - 또한, 미니잡, 미디잡 등 저임금 일자리 지원 확대, 민간고용서비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
  - 2005년 이후에는 메르켈 총리가 슈뢰더 총리의 개혁정책을 이어받아 해고법제 완화, 법인세 부담 축소 등 기업의 투자 확대 유인,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책 추진

## ② 네덜란드

- 고용률 70% 달성 시점(1994~1999년) : 1999년 고용률은 70.8%로 1994년 대비 6.9%p 상승, 실업률은 3.5%로 1994년 대비 3.1%p 하락

⇒ 1994~1999년 5년간 취업자수는 86만명(12.8%) 증가, 실업자수는 21만명(43.1%) 감소

- 노동시장 개혁정책 : 바세나르 협약, 신노선 협약 등 노사정 합의

- 1982년 노사정은 상생을 위해 임금인상 자제, 고용 확대, 감세, 사회보장개혁 등을 담은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 체결

- 1993년 임금인상 억제, 근로시간 단축 및 인적자원투자 확대, 근로소득세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노선 협약(New Course Agreement)' 체결

※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 임금 조정, ▲ 노동시장 유연화, ▲ 사회복지제도 개혁, ▲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등 4개 핵심분야에 걸친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 추진

→ 특히, 해고절차 간소화, 경제적·기술적·조직상 사유로 인한 해고절차 단축, 기간제 고용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근로시간에 의한 차별 금지법 제정 등 고용보호정책을 병행하는 유연안정화 정책 추진

## ③ 영 국

- 고용률 70% 달성 시점(1984~1989년) : 1989년 고용률은 72.0%로 1984년 대비 6.1%p 상승, 실업률은 7.2%로 1984년 대비 4.7%p 하락

⇒ 1984~1989년 5년간 취업자수는 258만명(10.9%) 증가, 실업자수는 114만명(35.9%) 감소

- 노동시장 개혁정책 : 대처리즘(1979~1990년)

※ 대처리즘은 저비용·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지출 삭감,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세금 감면, 경쟁촉진 등 시장경제원리에 기반을 둔 경제 개혁

- 공정임금제도 폐지, 최저임금 감액적용대상 확대 등 임금유연성 제고, 고용보호법 적용 대상자 축소, 해고 정당성의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조항 삭제 등 해고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추진

- 또한, 노조의 합법적 파업범위 축소(동조파업 불허, 파업전 비밀투표 등), 조합원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노동조합에 부과, 클로즈드숍 점진적 철폐 등을 통해 강성노조 개혁

- 이와 더불어,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 세제 개편, 실업급여 수급액 축소, 수급자격 엄격화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 규제 개혁 등을 통한 외자 유치, 고용보조금 확대·사업주 중심의 직업훈련제도 구축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투자 활성화 근로유인 강화 등 경제 활력 제고 도모

#### 4] 그 외 국가(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 ○ 고용률 70% 달성 시점

- (미국, 1982~1987년) 1987년 고용률은 70.7%로 1982년 대비 5.0%p 상승, 실업률은 6.3%로 1982년 대비 3.6%p 하락

⇒ 1982~1987년 5년간 취업자수는 1,279만명(13.2%) 증가, 실업자수는 322만명(30.5%) 감소

- (뉴질랜드, 1991~1996년) 1996년 고용률은 70.6%로 1991년 대비 5.4%p 상승, 실업률은 6.4%로 4.3%p 하락

⇒ 1991~1996년 5년간 취업자수는 23만명(15.2%) 증가, 실업자수는 6만명(34.6%) 감소

- (캐나다, 1983~1988년) 1988년 고용률은 70.0%로 1983년 대비 6.3%p 상승, 실업률은 12.2%로 1983년 대비 4.4%p 하락

⇒ 1983~1988년 5년간 취업자수는 168만명(15.5%) 증가, 실업자수는 44만명(29.0%) 감소

##### ○ 노동시장 정책

- (미국 ; 레이저노믹스, 1981~1989년) 에너지산업, 운수업, 통신업 등 공공사업 부문의 규제 정비 및 신규업체 시장 진입 허용은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 유발,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은 근로 및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실업 감소, 소득 증대,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짐

- (뉴질랜드 ; 고용계약법\* 도입, 1991년) 중앙집권적 노사관계를 분권적 노사관계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노조의 세력 약화, 노사분규 감소, 임금상승률 하락, 근로형태 다양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이 제고되었으며, 근로유인형 실업보험체계 구축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도 병행

\* 고용계약법의 주요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자유로운 고용계약 체결, 노동조합 의무 가입규정 폐지, 산업별·직종별 파업 금지, 노동조합의 독점적 교섭권 폐지, 단체협약의 포괄적용 폐지 등

→ 1984년 이후 뉴질랜드는 금융, 산업, 무역 등 경제 전반에 시장원리에 기반으로 한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주요정책으로는 소득세제 개편 및 법인세 인하, 국영기업 민영화, 금리자유화, 해외직접투자 출입 자유화, 관세 폐지 등

- (캐나다 ; 경제회생 아젠다, 1994년) 1975년 이후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적극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했으며, 1984년 이후부터는 지출 삭감을 통한 재정적자 축소, 적극적 일자리창출정책 확대, 선별주의적 사회프로그램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회생아젠다' 추진

# I 고용률 70%의 의미와 OECD 달성 사례

## 1. 고용률 70%의 의미

■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추격형 성장단계 (catch-up)의 종료 등이 맞물리면서 장기적인 '저성장-저고용 시대'에 직면

-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공급 하락, 저축률과 자본투입 감소로 이어져 결국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 총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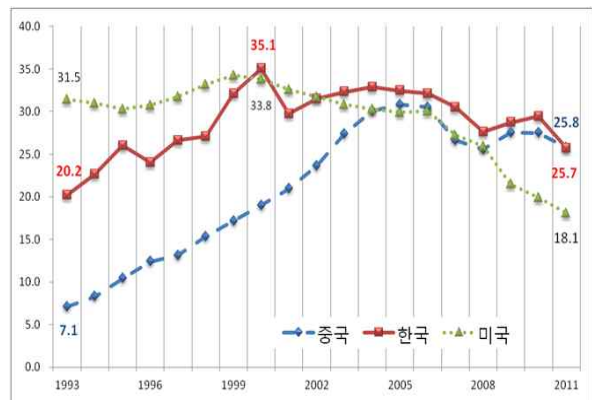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 = 노동투입 증가율 + 자본투입 증가율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성장회계방정식

- 기술진보도 선진국에서 입증된 기술을 수입하여 생산성을 높였던 추격형 성장단계가 끝나고 스스로 첨단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둔화될 전망

- 우리나라의 제조업 수출 중 하이테크(High-tech) 제품 비중은 2000년 35.1%로 미국(33.8%)을 추월했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25.7%로 중국(25.8%)에게 추월당함.

< 표 1 > 한국의 GDP성장률 전망, 제조업 수출 중 하이테크제품 비중 추이 (GDP성장률 및 기여도 전망) (제조업 수출 중 하이테크제품비중)

기간 (년)	GDP 성장률(%)	노동 투입	자본 스톡	총요소 생산성
2001 ~ 2010년	4.2	1.5	2.0	0.7
2011 ~ 2020년	4.1	0.9	1.9	1.3
2021 ~ 2030년	2.8	0.2	1.4	1.2
2031 ~ 2040년	1.7	-0.3	0.9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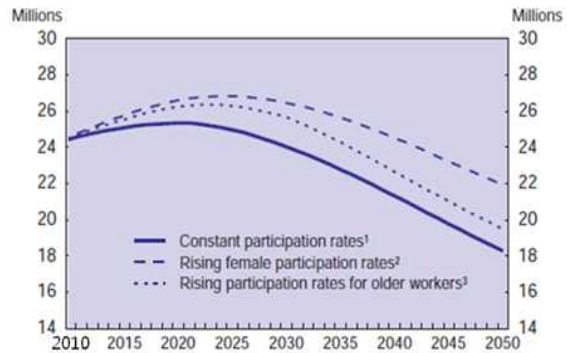
자료 : KDI, 미래버전 2040 -미래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국가발전 전략, 2010.6월; Worldbank, High-technology exports (% of manufactured exports) - 한국경총 재구성

○ 이 중에서 노동력 감소가 저성장의 핵심원인으로 추가적인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없을 경우 향후 30여년 간 2%대의 저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와 2차 대전 이후 미국, 1995~2005년 OECD 20개국의 경제성장요인 비교시, 미국, OECD 국가의 노동투입기여도는 각각 1.2%, 0.9%였으나,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노동투입기여도는 0.3%에 불과
- 이러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OECD는 현재 상대적으로 경제 활동이 저조한 여성과 고령화로 인해 증가할 50세 이상 인구의 경제 활동참가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제언

< 표 2 > 주요국의 성장요인 분석 및 2010~2050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따른 노동력 규모 추계  
(미국, OECD 20개국, 우리나라의 성장요인 비교) (노동력 규모 추계, 2010~2050)

기 간 (년)	GDP 증가율	기여도		
		노동 투입	자본 스톡	총요소 생산성
미국 (1948~2002)	3.6	1.2	1.2	1.2
OECD 20개국 (1995~2005)	2.8	0.9	0.7	1.2
한국 전망 (2011~2040)	2.9	0.3	1.4	1.2



자료 : KDI, 미래버전 2040 -미래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국가발전 전략, 2010.6월; OECD, A framework for growth and social cohesion in Korea, 2011

■ 하지만, 경직적인 노동시장, 남성 중심의 외별이 고용구조, 일자리 미스매치 등으로 야기된 노동시장의 경색(梗塞)으로 인해 경제 내 존재하는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과도한 고용보호법제와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한 야기된 노동시장 경직성은 일자리 창출, 고용형태 간 이동을 제약

- 과도한 고용보호법제와 강성노조의 중첩적 보호를 받는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경직성이 심화되면서 2000년대 고용률이 63%대에서 정체

※ OECD·WEF·IMD·세계은행·헤리티지재단 등 주요국제기관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해 고용보호 수준은 매우 높고 노사관계는 대립적이라고 평가

< 표 3 > 우리나라 경쟁력 종합순위 및 노동 관련 지표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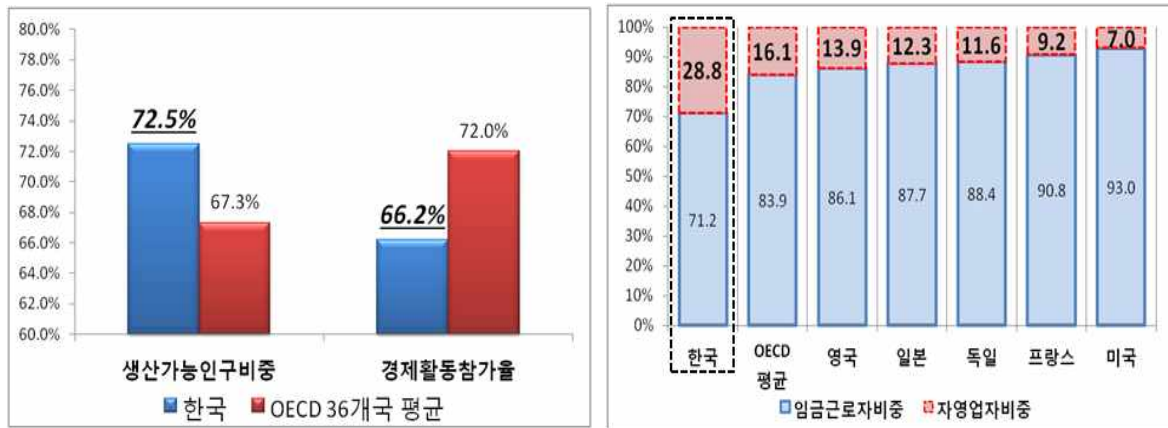
평가기관 (기준년도)	조사 대상	종합 순위	노동 관련 지표 세부내용 및 순위	
OECD (2013년)	34	-	정규직 고용보호수준(개별해고)	23위
			임시직 고용보호수준	26위
세계경제포럼 (2013년)	148	25위	노동시장 효율성	78위
			노사협력	132위
국제경영개발원 (2013년)	60	22위	노사 관계	56위
			해고 관련 규제(해고비용)	50위
세계은행 (2009년)	183	19위	고용·해고부문 경직성	150위
헤리티지재단 (2013년)	177	34위	노동시장 자유도 (규제 효율성)	135위

주 : OECD - 순위가 낮을수록 보호수준이 강함; WEF, IMD, 세계은행 - 순위가 낮을수록 경직적

자료 : OECD Webpage, StatExtracts EPL Version3, 2013년 기준;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3; Worldbank, Doing business 2010, 2009;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2014, 2013, Heritage Foundation Webpage, 2013 Index of Economic Freedom, 2013

- 이러한 노동시장 경직성은 경제주체의 노동시장 진·출입을 제약하면서 취업취약계층 및 실업자들이 재취업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되거나 자영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
  -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1년 72.5%로 OECD 36개국 중 가장 높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67.3%로 OECD 36개국 중 30위로 나타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음.
  -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28.8%(2010년 기준)로 OECD 34개국 중 4위에 해당하며 OECD 평균 16.1%에 비해 12.7%p 높음.

< 그림 1 > 생산가능인구비중, 경제활동참가율, 자영업자비중 비교  
 (생산가능인구비중 및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기준) (OECD 자영업자 비중, 2010년 기준)



주1 : 생산가능인구비중은 전체 인구 중 15~64세 인구비중,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주2 : OECD 자영업자비중은 우리나라 통계청의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와 동일  
 자료 : OECD, OECD Economic Policy Paper No. 3: Looking to 2060: A global vision of long-term Growth, 2012; OECD, Factbook 2012, 2012

- 또한, 잔존하고 있는 '남성 1인 생계부양자모델(Male Bread winner Model)'은 '남성-전일제-정규직' 중심의 편향된 노동공급을 유발함으로써 '고임금-장시간근로-저고용'의 악순환 초래
  -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유교문화와 전통적 가족관의 영향으로 남성 가장의 근로수입으로 가구 구성원 전체의 생계비를 충당하는 형태가 일반적
    - ※ 우리나라의 외벌이가구 비중은 42.0%(12년)로 OECD 21개국 평균 30.7%에 비해 11.3% 높은 반면, 맞벌이가구 비중은 43.5%(12년)로 OECD 21개국 평균 57.6%(08년)에 비해 14.1%p 낮음.
  - 이러한 가계경제구조는 남성 위주의 장시간 전일제 고용구조로 이어져 높은 임금 인상 요구, 과도한 고용보호 요구, 초과근로의 만성화, 저조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 등을 야기
- 청년층의 과도한 고학력화는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 선호로 이어지면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확대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는 원인으로 작용
  -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노동력은 2012년 1,050만명으로 2000년 685만명 대비 365만명 증가했으나, 이들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일자리\*는 2012년 602만개로 2000년 429만개에 비해 173만개 증가하는데 그침.

\* 대기업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부문에 종사하는 상용직 근로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관리직 전문직 종사자(한국은행,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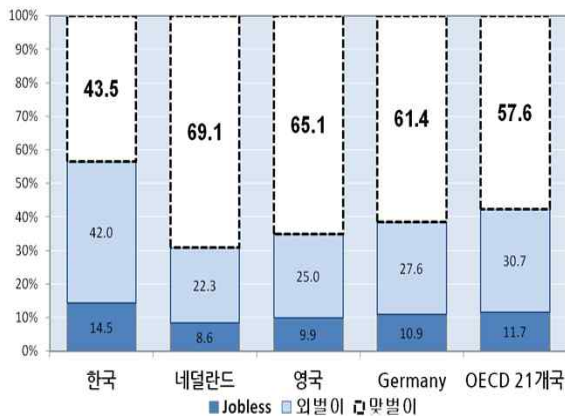
- 대학졸업자들은 선호일자리 외의 일자리를 선택하기 보다는 미래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미취업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심화

\* 우리나라의 15~29세 대졸 청년층 NEET 비율은 25.0%로 OECD 29개국 중 2위(OECD 평균 12.4%, 2009)

< 그림 2 > 맞벌이가구 비중 및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외벌이 및 맞벌이 가구 비중)

(고학력일자리 미스매치 추이 변화)



주1 : 한국 외벌이, 맞벌이 가구비중은 2012년 기준, 이외 국가는 2008년 기준

주2 : 생산가능인구비중은 전체 인구 중 15~64세 인구비중,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자료 : 통계청, 2012년 맞벌이 가구통계, 2012 ; OECD, Doing Better for Families, 2011 ; 한국은행, 경기-고용 간 관계 변화의 구조적 요인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2013

■ 더욱이, 이러한 현행 노동시장 구조는 소득불평등 및 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갈등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기술진보와 개방화 등으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증가하고 상대적 빈곤율이 상승하면서 중산층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소득 불평등 지표 추이(가처분소득,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

- GINI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 1990년 0.256 → 2012년 0.285

-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비중) : 1990년 7.1% → 2012년 12.1%

- 중산층 비중(중위소득 50~150% 미만 비중) : 1990년 75.4% → 2012년 69.1%

○ 특히, 자영업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3.1%(2011년)에 달해 상용근로자 가구 4.4%보다 8.7%p 높음(통계청, 2013).

- 자영업자 간 과다경쟁, 영세화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월평균 순이익이 평균 149.2만원에 불과(현대경제연구원, 2012)

○ 또한, 가구형태별로는 1998~2008년 사이 외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소득은 연평균 24% 낮고\*, 상대적 빈곤율은 약 3배 높게 나타나 가구소득 격차가 가구의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 시장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외벌이 가구의 소득은 94.5, 맞벌이 가구의 소득은 123.7

- 특히, 외벌이 가구가 상위층에 속할 비율(중위소득의 150% 이상)은 맞벌이 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중하층에 속할 비율(중위소득의 50~75%)은 맞벌이 가구의 2배 이상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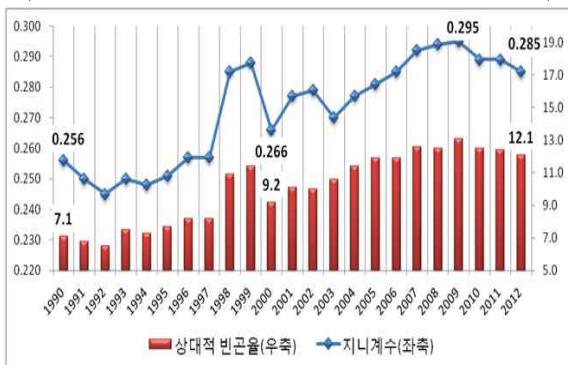
※ 강신욱, 맞벌이가구의 실태를 통해 본 맞벌이가구 지원 정책의 필요성, 2009

○ 이는 자영업의 공급 과잉을 유발하는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남성 외벌이 위주의 가계소득구조가 지속될 경우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

< 표 4 > 맞벌이가구 비중 및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1990년 이후 GINI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추이)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계층분포, 1998~2008년)



구분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위층
외벌이 가 구	11.5%	20.7%	48.9%	18.9%
맞벌이 가 구	3.9%	10.3%	50.4%	35.5%

주1 : GINI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추이는 가치분소득,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 외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계층 분포는 시장소득,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1998~2008년간 평균 값

주2 : 빈곤층 - 중위소득 50% 미만 비중, 중하층 - 중위소득 50~75% 비중, 중상층 - 중위소득 75~150% 비중, 상위층 - 중위소득 150% 이상 비중

자료 :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 강신욱, 맞벌이가구의 실태를 통해서 본 맞벌이가구 지원 정책의 필요성, 2009

■ 이에 저성장구조의 고착화와 기존 노동시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를 목표로 한 새로운 노동시장 패러다임 구축이 시급

○ '고성장-전통적 가족경제구조를 바탕으로 한 기존 노동시장 패러다임은 '저성장-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편되지 못하면서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합한 성장·고용모델 구축은 물론, 중산층 확대를 위한 대안도 제시하기 어려운 한계점 노출

○ 이에 '고용률 제고'를 방향타 삼아 일자리 창출여력을 확대하고 경제주체의 근로 활성화와 이를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시장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야 함.

- 고용률은 '한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근로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새로운 노동시장 패러다임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부합

■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동 보고서는 단기간(5년) 내 고용률 70% 달성을 경험한 OECD국가들의 노동시장 정책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노동시장 패러다임 구축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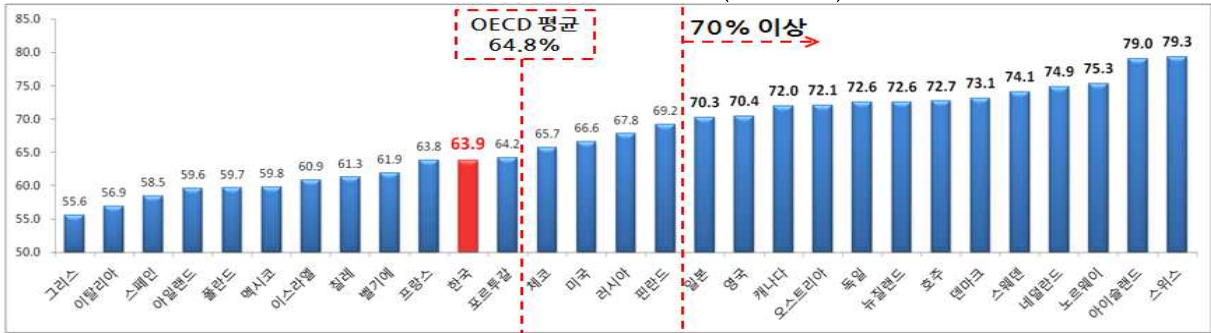
## 2. 단기간(5년)내 고용률 70%를 달성한 OECD 사례

■ 2011년 기준 15~64세 고용률이 70%를 상회하는 OECD 국가는 총 13개국

- (고용률 80~75%) 스위스 79.3%, 아이슬란드 79.0%, 노르웨이 75.3%
- (고용률 75~72%) 네덜란드 74.9%, 스웨덴 74.1%, 덴마크 73.1%, 호주 72.7%, 뉴질랜드 72.3%, 독일 72.3%, 오스트리아 72.1%, 캐나다 72.0%
- (고용률 72~70%) 영국 70.4%, 일본 70.3%

※ 2011년 15~64세 고용률 : 우리나라 63.9%, OECD평균 64.8%

< 그림 3 > OECD 29개국의 15~64세 고용률 비교(2011, %)



자료 : OECD

■ 1970년 이후 고용률 70%를 하회하다 이를 넘어선 경험이 있는 OECD국가는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총 11개국(중복 제외)

- 고용률 70% 달성시 5년내 고용률 5%p 이상 상승 국가(총 7개국)  
: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노르웨이
- 고용률 70% 달성시 5년내 고용률 5%p 미만 상승 국가(총 5개국)  
: 호주, 오스트리아, 일본, 캐나다, 핀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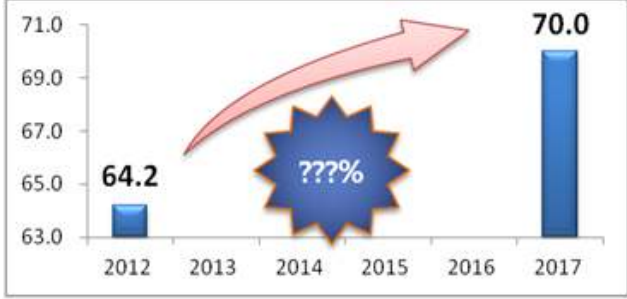
■ 위 국가들의 노동시장 정책 방향과 고용형태별·연령별·성별 고용변화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고용률 제고를 위한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가 2017년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2년 기준 15~64세 기준 고용률이 64.2%임을 감안하면 향후 5년간 5.8%p 상승할 필요
- 따라서, 고용률이 5년내 5%p 이상 상승한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총 6개국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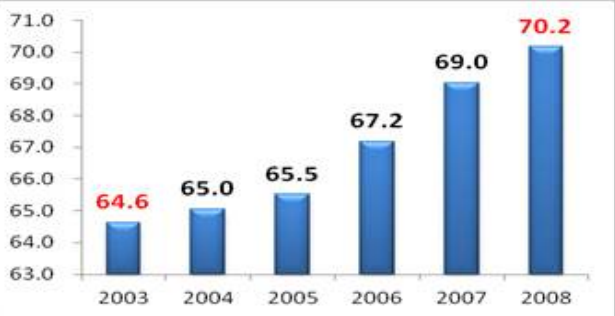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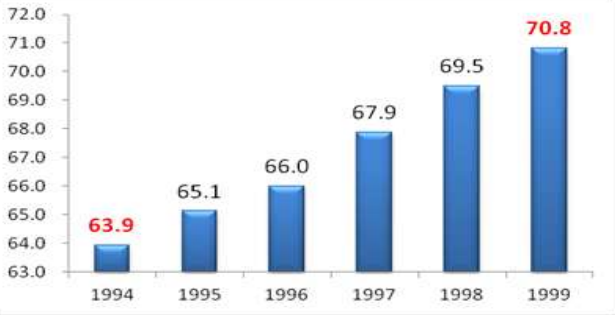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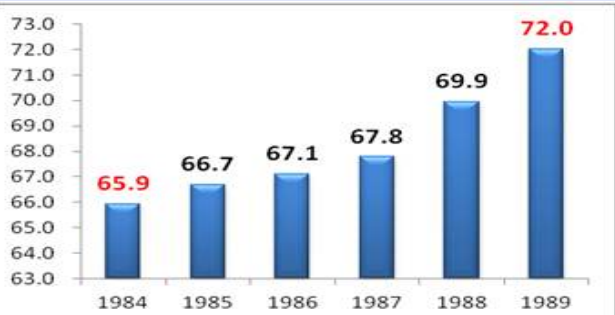
< 참고 1 > 고용률 70% 달성 국가 중 노르웨이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 노르웨이가 고용률 70%를 하회하다 이를 넘어선 시점은 1980년(72.2%)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70%를 상회
  - ※ 1970년대 후반 노르웨이의 실업률과 고용률(15~64세, %)
  - 고용률 : ('75) 65.0 ('76) 67.6 ('77) 68.5 ('78) 69.1 ('79) 69.6 ('80) 72.2
  - 실업률 : ('75) 2.3 ('76) 1.8 ('77) 1.5 ('78) 2.0 ('79) 2.0 ('80) 1.7
- 분석대상에서 노르웨이를 제외한 이유는 ▲ 대상기간이 1970년대(1975~1980년)로 약 40년이 경과한 사례이고, ▲ 1970년대 노르웨이 노동시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低실업·高고용' 상황에 처하게 된 주요원인이 북해유전 개발\*이라는 공급측 요인에 있으므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현실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임.
  - \* 1969년 북해 유전 발견, 1971년 석유 생산 시작, 1975년~ 석유와 가스 순수출국으로 전환

< 표 5 > 1970년 이후 OECD국가 중 단기간(5년) 내 고용률 70% 달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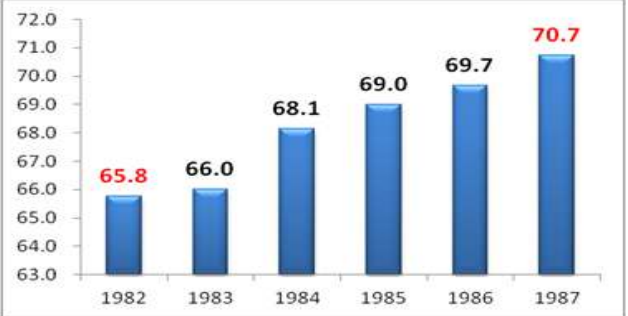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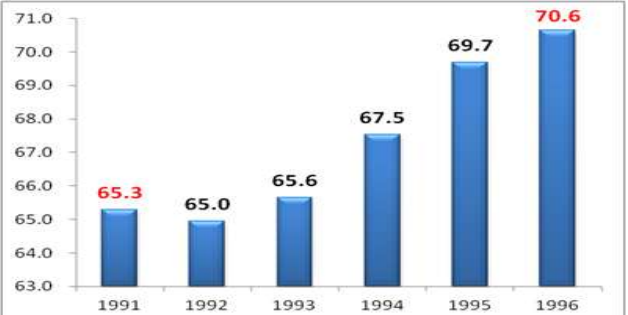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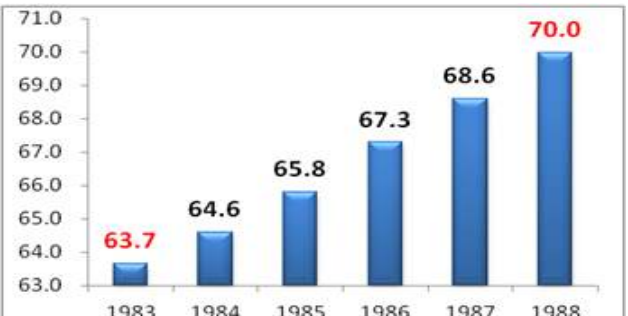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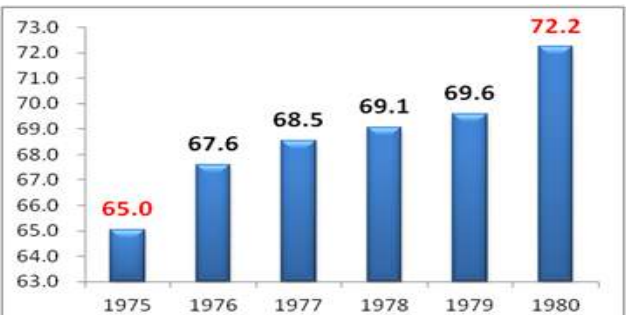
국 가	5년 내 고용률 70% 달성 사례
 <p>우리나라 달성 목표</p>	<p>2012~2017년 (5.8%p ↑)</p> 

**70% 달성시 5년 내 고용률 5%p 이상 상승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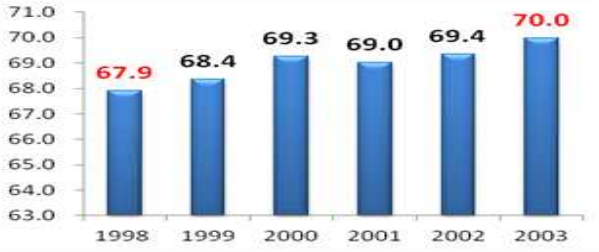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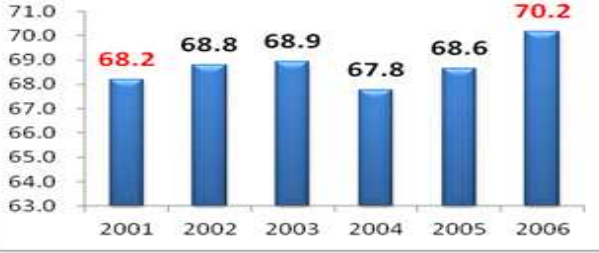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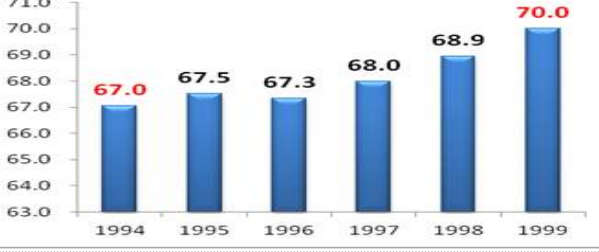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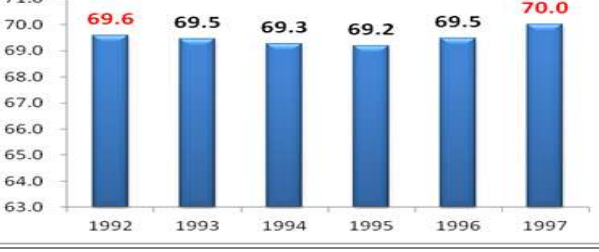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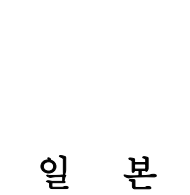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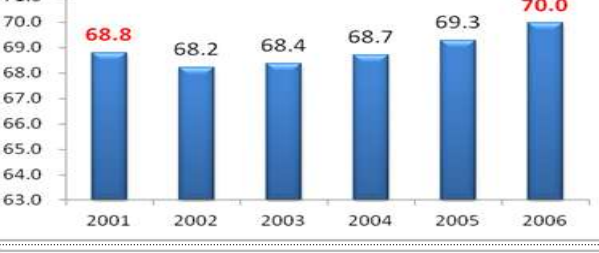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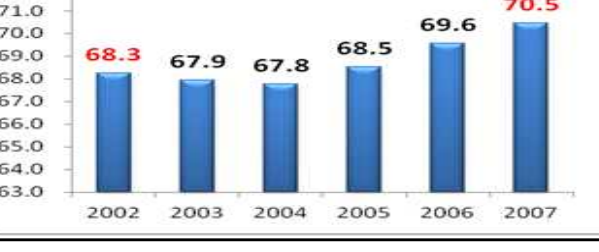
 <p>독 일</p>	<p>2003~2008년 (5.6%p ↑)</p>	
 <p>네덜란드</p>	<p>1994~1999년 (6.9%p ↑)</p>	
 <p>영 국</p>	<p>1984~1989년 (6.1%p ↑)</p>	

국 가	5년내 고용률 70% 달성 사례
-----	-------------------

**70% 달성시 5년 내 고용률 5%p 이상 상승 국가**

 미 국	1982~1987년 (5.0%p ↑)	 <table border="1"> <thead> <tr> <th>Year</th> <th>Employment Rate (%)</th> </tr> </thead> <tbody> <tr><td>1982</td><td>65.8</td></tr> <tr><td>1983</td><td>66.0</td></tr> <tr><td>1984</td><td>68.1</td></tr> <tr><td>1985</td><td>69.0</td></tr> <tr><td>1986</td><td>69.7</td></tr> <tr><td>1987</td><td>70.7</td></tr> </tbody> </table>	Year	Employment Rate (%)	1982	65.8	1983	66.0	1984	68.1	1985	69.0	1986	69.7	1987	70.7
Year	Employment Rate (%)															
1982	65.8															
1983	66.0															
1984	68.1															
1985	69.0															
1986	69.7															
1987	70.7															
 뉴질랜드	1991~1996년 (5.4%p ↑)	 <table border="1"> <thead> <tr> <th>Year</th> <th>Employment Rate (%)</th> </tr> </thead> <tbody> <tr><td>1991</td><td>65.3</td></tr> <tr><td>1992</td><td>65.0</td></tr> <tr><td>1993</td><td>65.6</td></tr> <tr><td>1994</td><td>67.5</td></tr> <tr><td>1995</td><td>69.7</td></tr> <tr><td>1996</td><td>70.6</td></tr> </tbody> </table>	Year	Employment Rate (%)	1991	65.3	1992	65.0	1993	65.6	1994	67.5	1995	69.7	1996	70.6
Year	Employment Rate (%)															
1991	65.3															
1992	65.0															
1993	65.6															
1994	67.5															
1995	69.7															
1996	70.6															
 캐 나 다	1983~1988년 (6.3%p ↑)	 <table border="1"> <thead> <tr> <th>Year</th> <th>Employment Rate (%)</th> </tr> </thead> <tbody> <tr><td>1983</td><td>63.7</td></tr> <tr><td>1984</td><td>64.6</td></tr> <tr><td>1985</td><td>65.8</td></tr> <tr><td>1986</td><td>67.3</td></tr> <tr><td>1987</td><td>68.6</td></tr> <tr><td>1988</td><td>70.0</td></tr> </tbody> </table>	Year	Employment Rate (%)	1983	63.7	1984	64.6	1985	65.8	1986	67.3	1987	68.6	1988	70.0
Year	Employment Rate (%)															
1983	63.7															
1984	64.6															
1985	65.8															
1986	67.3															
1987	68.6															
1988	70.0															
 노르웨이	1975~1980년 (7.2%p ↑)	 <table border="1"> <thead> <tr> <th>Year</th> <th>Employment Rate (%)</th> </tr> </thead> <tbody> <tr><td>1975</td><td>65.0</td></tr> <tr><td>1976</td><td>67.6</td></tr> <tr><td>1977</td><td>68.5</td></tr> <tr><td>1978</td><td>69.1</td></tr> <tr><td>1979</td><td>69.6</td></tr> <tr><td>1980</td><td>72.2</td></tr> </tbody> </table>	Year	Employment Rate (%)	1975	65.0	1976	67.6	1977	68.5	1978	69.1	1979	69.6	1980	72.2
Year	Employment Rate (%)															
1975	65.0															
1976	67.6															
1977	68.5															
1978	69.1															
1979	69.6															
1980	72.2															

## 70% 달성시 5년 내 고용률 5%p 미만 상승 국가

 호주	1998~2003년 (2.1%p ↑)	
 오스트리아	2001~2006년 (2.0%p ↑)	
 캐나다 II	1994~1999년 (3.0%p ↑)	
 일 본	1992~1997년 (0.4%p ↑)	
 핀란드	2001~2006년 (1.2%p ↑)	
 핀란드	2002~2007년 (2.1%p ↑)	

## II 고용률 70% 달성 전후 상황과 노동시장 개혁

### 1. 독일



➔
고용률 70% 달성 시점 : 2003~2008년

➔
노동시장 개혁 : Agenda2010, Hartz Reform(2003~)

#### ■ 2003년 전후 고용시장 상황 :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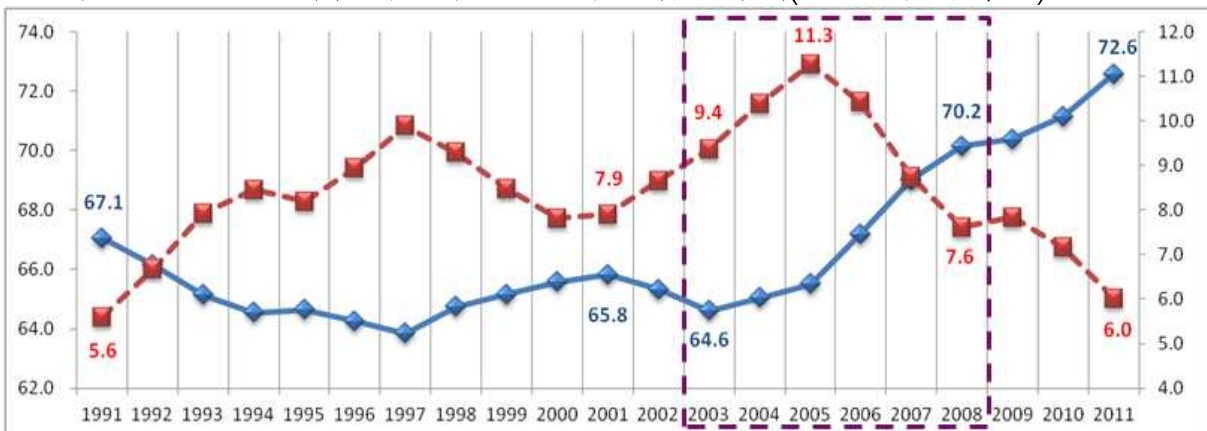
○ 2000년대 초반까지 경직된 노동시장, 고용없는 성장 등으로 '유럽의 병자'라 불리웠으나, 2003년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 이후 '유럽의 경제적 화력 발전소(Europe's Economic Powerhouse)'로 변모

- (2003년 전) 고용률은 2001년 65.8%에서 2003년 64.6%로 1.2%p 하락, 실업률은 2001년 7.9%에서 2003년 9.4%로 1.5%p 상승
- (2003~2008년) 2008년 고용률은 70.2%로 2003년 대비 5.6%p 상승, 실업률은 7.6%로 2003년 대비 1.8%p 하락

⇒ 2003~2008년 5년간 취업자수는 258만명(7.3%) 증가, 실업자수는 53만명(14.4%) 감소

※ 2011년 취업자수 3,902만명, 고용률 72.6% ; 실업자수 250만명, 실업률 6.0%

< 그림 4 > 1991년 이후 독일의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15~64세 기준, %)



자료 : OECD

## ■ 노동시장 정책 : 아젠다2010, 하르츠개혁 등(2003~)

- 2003년 아젠다2010, 하르츠 개혁을 통해 해고보호법제 완화, 비정규직 규제 완화, 근로 연계 복지 강화 등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 시행
  - Agenda 2010의 중심은 하르츠 개혁으로 해고보호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규제 완화 등 법·제도 개선
  - 이와 더불어, Mini-job, Midi-job\* 등 저임금 일자리 지원 확대, 민간고용서비스 규제 완화 및 민간위탁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
    - \* 월 소득이 4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저임금 일자리 및 연 2개월 미만의 단기고용(미니잡), 또는 월 400~800유로 일자리(미디잡)
  -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단축 및 급여수준 조정, 실업부조와 사회부조 통합 등 실업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실업자와 취업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유도
- 2005년 이후에는 메르켈 총리가 슈뢰더 총리의 개혁정책을 이어받아 기업의 투자 확대 유인,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보장체계 개혁 등의 정책을 확대시켜 나감.
  - 해고법제완화, 기업의 법인세 부담 축소, 고용보험료율 인하 등의 정책 추진

< 표 5 > 슈뢰더 정부와 메르켈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정책 주요내용

구 분	추진정책 세부내용
슈뢰더 정부 (Agenda 2010, 2003~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고용시 해고보호조항 적용대상 완화(5인 이상 → 10인 이상)</li> <li>- 신규창업시 기간제근로자 사용가능기간 확대허용(원칙 : 2년 → 4년)</li> <li>-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 완화(해고절차 단순화 및 적용대상 완화)</li> <li>- 파견근로 관련 규제 완화(파견상한기간 폐지, 해고 후 3개월 내 재고용금지 폐지, 건설업 파견금지규정 완화 등)</li> <li>- 실업급여 수급기간 단축, 실업부조·사회부조 통합으로 실업자의 구직촉진</li> </ul>
메르켈 정부 (2005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고제한법 적용예외 사업장 확대(10인 이하 → 20인 이하)</li> <li>- 자유해고가 가능한 수습기간 연장(6개월 → 2년)</li> <li>- 법인세율 축소(39% → 29.8%), 고용보험료율 인하 ('06년 6.5% → '07년 4.2% → '08년 3.3%)</li> <li>- 조기퇴직시(63세) 연금 감액(3.6%) 및 퇴직 연장시 증액(6%)</li> </ul>

자료 : 한국경총, 독일은 글로벌 고용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 - 독일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와 시사점 -, KEF정책 2012-02, 2012

## 2. 네덜란드



➔ 고용률 70% 달성 시점 : 1994~1999년

➔ 노동시장 개혁 : The Wassenaar Agreement(1982)  
The New Course Agreement(1993)

### ■ 1983년 전후 고용시장 상황 :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

○ 1980년대 초 네덜란드 병\*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했으나 1982.11월 바세나르 협약 체결을 계기로 경제위기시 노사정 협력문화가 자리잡으면서 1990년대 말 '네덜란드 기적(Dutch Miracle)'의 토대 구축

\* 막대한 천연가스 개발 수입에 기초한 방만한 사회보장 제도 운영, 이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및 근로자들의 근무 기피, 임금 인상을 둘러싼 심각한 노사갈등 등을 의미

- (1983년 전후) 1980년대 초 성장률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1984년에는 고용률은 50.1%까지 하락하고 실업률은 14.3%까지 상승
- (1994년 전후)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재연되면서 1990년대 초반 고용률이 63.8%로 정체되고 실업률이 다시 상승세를 보임.
- (1994~1999년) 1999년 고용률은 70.8%로 1994년 대비 6.9%p 상승, 실업률은 3.5%로 1994년 대비 3.1%p 하락

⇒ 1994~1999년 5년간 취업자수는 86만명(12.8%) 증가, 실업자수는 21만명(43.1%) 감소

※ 2011년 취업자수 823만명, 고용률 74.9% ; 실업자수 38만명, 실업률 4.4%

< 그림 5 > 1981년 이후 네덜란드의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15~64세 기준, %)



자료 : OECD

## ■ 노동시장 정책 : 바세나르 협약, 신노선 협약 등 노사정 합의

○ 1982년 노사정은 상생을 위해 임금인상 자제, 고용 확대, 감세, 사회 보장개혁 등을 담은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 체결

- 노조 측은 임금 동결, 임금 물가연동제의 시행을 2년간 보류,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 완화, 근로자 부담 확대를 받아들이고,
-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주당 40시간 → 38시간)과 노동 기회의 재분배를 통한 고용 창출(30시간 미만 시간제 고용 활성화)에 합의
- 정부는 재정지출 억제와 함께,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및 고용 확대를 유도

\* 공무원 임금, 최저임금, 사회보장수당의 3.5% 삭감, 일정수준 이상의 이익을 내는 기업에게 정상 법인세율(40%)보다 낮은 법인세율(35%) 적용 등

○ 또한, 1993년 임금인상 억제, 근로시간 단축 및 인적자원투자 확대, 근로 소득세 경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993년 '신노선 협약(New Course Agreement)\*' 체결

\* 1988~1992년 세계경제의 일시 호황을 계기로 한 노조의 임금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요구 확대, 1993년 이후 경제 불황 등이 겹치면서 나타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협약

- 노조 측은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동시에 노사협의수준을 부문별 혹은 지역별로 하향 조정하는데 동의하고,
- 경영계는 수익성 개선과 부문별 근로시간 단축(주당 38시간 → 36시간)에 동의하고, 직업훈련 강화 및 적극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약속
- 정부는 노동의 임금인상 자제를 보상하기 위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하향조정하기로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지위 향상을 보장

○ 또한, '바세나르 협약', '신노선 협약' 체결 이후에도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협력 문화가 자리잡았으며, 노동시장 유연안정화(Flexicurity), 사회복지체제 개편 등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

- 노사정은 바세나르 협약, 신노선 협약 이후 ▲ 1998년 고용유연성 및 안정성 법 도입, ▲ 2004년 가을(Autumn) 협약, ▲ 2008년 10월 협약 등에 합의하며 노동시장 안정 도모
- 노사협약을 통한 임금 안정을 기반으로 해고 및 비정규직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책도 병행
- 또한, 과도한 사회보장으로 인한 복지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부조, 실업수당, 상병급여 수급자의 취업노력을 의무화하는 등 사회복지체제 개편

⇒ 바세나르 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 임금 조정, ▲ 노동시장 유연화, ▲ 사회복지제도 개혁, ▲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등 4개 핵심분야에 걸친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 추진

< 표 6 >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기점으로 한 네덜란드 노동시장 개혁 방향(1982~2004년)

구 분	내 용
임금 조정	-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한 지속적인 임금 인상 억제 - 최저임금 인상 억제 -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유연화	- 해고통지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 경제적, 기술적, 조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절차 단축 - 기간제 고용규제 완화 등
고용 보호	- 근로시간에 의한 차별 금지법 제정(근로시간에 비례한 균등한 임금, 시간제 근로의 연금혜택 배제 금지 등) - 파견근로자와 파견업체 계약을 정규계약으로 간주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
사회보장제도 개혁	- 보험급여액과 급여기간 단축 - 수혜대상 축소 및 수혜기준 강화 - 시행 및 감독기관 개편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수요자 중심(공공고용 확대, 임금보조, 세금감면 등)에서 공급자 중심(급여 대상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적극적 정책사업 의무 부과)으로 변경 - 복지수당 지급에 대한 재정 책임을 지자체에게 부과 (복지수당 지급 대신 재취업지원 활성화) - 공공고용서비스기관 노사정 3자 관리, 민간취업알선서비스 허용 등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네덜란드 경제개혁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1997; 성태규, 선진국의 노동시장 개혁 사례 연구, 노동부 연구용역, 2008; 정형우, 네덜란드 노동사회개혁 추진 동향, 2005년 4/4분기 노무관 정기업무보고, 2005를 취합하여 한국경총 재구성

### 3. 영 국



- ➔ 고용률 70% 달성 시점 : 1984~1989년
- ➔ 노동시장 개혁 : Thatcherism(1979~1990)

#### ■ 1980년 전후 고용시장 상황 : 영국 병(British Disease)

○ 1970년대 영국은 영국병\*, 오일쇼크,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에 직면했으나, 1979~1990년 집권한 대처 정권의 시장 중심 개혁으로 이를 극복하고 1980년대 후반 노동시장 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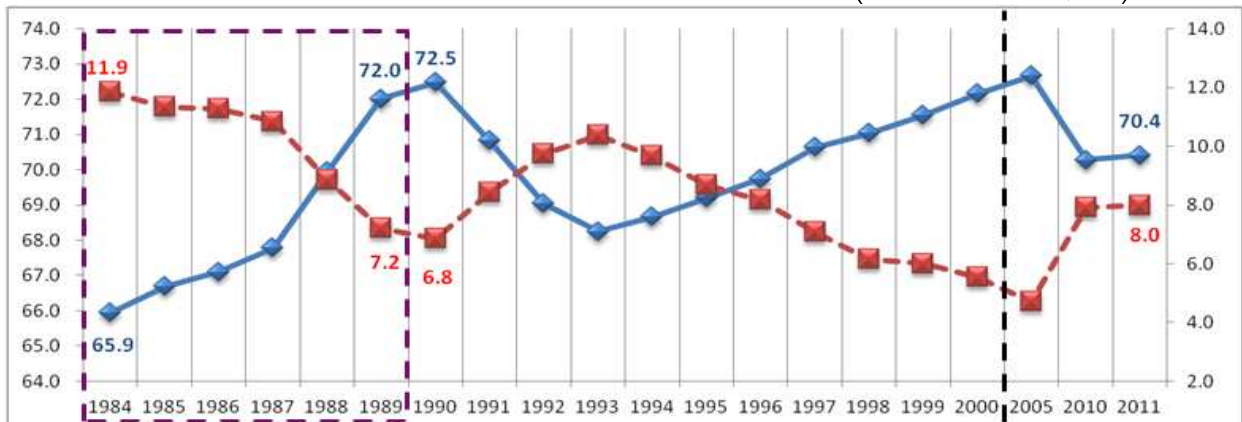
\* 과도한 사회복지, 강성노조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한 지속적인 임금 상승, 생산성 저하 등 1970년대 영국경제가 몰락하게 된 고복지·고비용·저효율의 사회현상을 의미

- (1984년 전) 2차대전 후 1~2%대를 유지하던 실업률이 1970년대 후반 부터 상승하면서 1982년 13%에 달했으며, 1970년대 매년 2,000여건 이상 파업이 발생했고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1979년 3천만일에 달함.
- (1984~1989년) 1989년 고용률은 72.0%로 1984년 대비 6.1%p 상승, 실업률은 7.2%로 1984년 대비 4.7%p 하락(90년대 중반 파업일수는 200여건으로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는 41만 5천일로 감소)

⇒ 1984~1989년 5년간 취업자수는 258만명(10.9%) 증가, 실업자수는 114만명(35.9%) 감소

※ 2011년 취업자수 2,828만명, 고용률 70.4% ; 실업자수 246만명, 실업률 8.0%

< 그림 6 > 1984년 이후 영국의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15~64세 기준, %)



자료 : OECD

## ■ 경제개혁 정책 : 대처리즘(Thatcherism, 1979~1990)

- 대처리즘은 저비용·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지출 삭감,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세금 감면, 경쟁촉진 등 시장경제원리에 기반을 둔 경제 개혁을 의미
  - 특히, 대처 정권은 영국병의 근원을 강성노조로 인식하고 5번의 노동법 개정을 통해 개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지도부를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정치집단'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를 연계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로 재설정
- ※ 노사관계 개혁 관련 세부 정책 방향
- ①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범위 축소(동조파업 불허, 파업 전 비밀투표 등)
  - ②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노동조합에게 부과
  - ③ 단체협상에 대한 정책적 법적 지원 축소(노조승인 사용자 일임, 경영정보 요구범위 축소 등)
  - ④ 개별 조합원의 선택의 자유 신장(클로즈드숍 점진적 철폐 등)
  - ⑤ 노동조합 내 민주주의 실현(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제 등)
- 이와 더불어, 임금유연성 제고, 해고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도 추진하여 탄력적인 고용관계를 조성함으로써 경제상황에 따라 생산요소가 원활히 배분되고 노동비용이 통제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표 8 > 1979~1990년 대처 정권의 노동시장 개혁 관련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노사관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성 제고, 단체행동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행동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비밀우편투표) 의무화</li> <li>- 노조간부의 선거 및 노조규약의 변경 등에 대한 조합원 투표 지원</li> <li>- 피켓팅 규제(피켓 수, 자신 사업장 내 등으로 제한)</li> <li>-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권 축소</li> </ul> </li> <li>○ 클로즈드숍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로즈드숍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도입('80년)</li> <li>- 클로즈드숍 강제를 위한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권 박탈('88년)</li> <li>- 클로즈드숍 전면 불법화('90년)</li> </ul> </li> <li>○ 노조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법률적 보호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적 교섭권 인정제도 의무화 폐지('75년)</li> <li>- 단체교섭 효력의 동일 산업 내 확장조항 폐지</li> </ul> </li> </ul>
노동시장 유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고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고정당성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조항 삭제</li> <li>- 고용분쟁심판소가 해고정당성 판단시 기업규모 및 경영자원 고려</li> <li>- 고용보호법 적용대상자 축소(근속기간 6개월 → '79년 1년 → '85년 2년)</li> </ul> </li> <li>○ 임금유연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교섭의 분권화(공정임금제도* 폐지)</li> <li>- 최저임금 할인제 확대('81년 18세 미만, '86년 21세 미만 → '93년 최저임금제 폐지)</li> </ul> </li> </ul>

\* 공정임금제도는 동일지역 내 동일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준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나머지 부문에 확장 적용하는 제도로 1980~198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 또한, 대치 정부는 세제 개혁, 사회보장 개혁, 일자리창출정책을 통해 투자 활성화, 근로유인 강화 등 경제 활력 제고 도모

-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를 인하하여 투자 및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실업보험 수혜자격 엄격화, 수급기간 제한 등 사회보장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실업자의 구직활동 촉진
- 직업훈련도 산업수요 변화에 따라 훈련의 양과 질이 결정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하고 고용주가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표 9 > 1979~1990년 대치 정부의 세제, 사회보장제도 개혁 내용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세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율 인하(최저세율 33%→20%, 최고세율 60%→40%)</li> <li>○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 축소(11단계→2단계),</li> <li>○ 투자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인하(83%→60%),</li> <li>○ 법인세 인하(소기업 42%→30%→25%, 중견기업 52%→35%)</li> <li>○ 부가가치세 증세(모든 재화 15%로 일괄인상)</li> </ul>
사회보장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급여 수급액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수비례적 보충급여, 아동부양급여 폐지, 실업급여 과세</li> </ul> </li> <li>○ 실업급여 수급자격 엄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급여 지급대상자 축소(18세 미만자 제외, '88년)</li> <li>- 피보험 단위기간 연장</li> <li>-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의무 강화(재출발 프로그램, '86년)</li> </ul> </li> </ul>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직업훈련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규제 철폐 등 외자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도모</li> <li>○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실업자 고용사업주에게 보조금 지급(Work-Start 제도)</li> <li>- 청년층 훈련 및 채용알선 프로그램 확대</li> <li>- 한 사람 업무에 두 명의 실업자를 채용시 고용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분할제도(Job Splitting Scheme) 실시</li> </ul> </li> <li>○ 사업주 중심의 직업훈련제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 직업훈련기구를 사용자들이 구성한 조직으로 개조하고 훈련목표·내용의 결정, 기구운용, 재정조달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li> <li>- 청소년·실업자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던 기능센터의 민영화</li> <li>- 사업주 주도 하에 전국직업자격제도(NCVQ) 도입</li> </ul> </li> </ul>

자료 : 김영세, 대치의 경제개혁 : 부흥과 번영의 해법, 이혜훈 의원실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7; 고용노동부, 선진국의 노동시장 개혁 사례 연구, 2008; 한국노동연구원, 1만~2만 불 시기 선진국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2006를 취합하여 한국경총 재구성

#### 4. 그 외 국가(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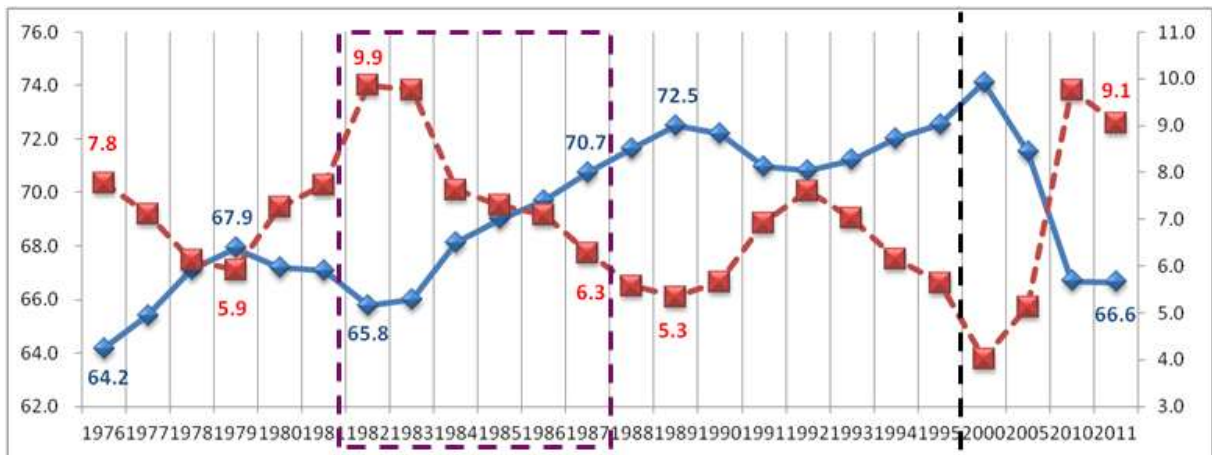
###### ○ 1980년 전후 고용시장 상황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1982년 전) 1979~1981년 평균 실질GDP성장률 1.8%로 저조하고, 물가상승률은 11.7%에 달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70년대 5%대였던 실업률이 1982년 9.9%까지 상승
- (1982~1987년) 1987년 고용률은 70.7%로 1982년 대비 5.0%p 상승, 실업률은 6.3%로 1982년 대비 3.6%p 하락

⇒ 1982~1987년 5년간 취업자수는 1,279만명(13.2%) 증가, 실업자수는 322만명(30.5%) 감소

※ 2011년 취업자수 1억 3,322만명, 고용률 66.6% ; 실업자수 1,328만명, 실업률 9.1%

< 그림 7 > 1984년 이후 미국의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15~64세, %)



자료 : OECD

###### ○ 경제개혁 정책 : 레이저노믹스(Reaganomics, 1981~1989)

- 레이저노믹스는 미국 40대 대통령(1981~1989)의 이름인 'Reagan'과 'Economics'의 복합어로, 경제 회복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펼친 세율 인하, 규제 완화, 정부지출 삭감, 긴축통화정책 등을 의미

- 에너지산업, 운수업, 통신업 등 공공사업부문의 규제 정비 및 신규업체 시장 진입 허용은 경쟁원리에 의한 시장 조정기능을 회복시켜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 유발(삼성경제연구소, 1998)

Ex1) 항공산업은 규제 해제로 인해 1981~1985년 사이 76개 대형항공사가 신설 되면서 서비스질 제고 및 항공망 확충 효과 발생

Ex2) 트럭운수산업은 규제 해제 후 운수비용 감소, 해제 후 2년 간 1만개의 트럭 운수회사 설립, 트럭으로 운반되는 상품 가격 하락 등의 효과 발생

- 특히, 규제 완화와 함께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은 근로 및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실업 감소, 소득 증대,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짐(민경국, 2008)

Ex1) 부유층 조세 삭감은 부유층이 경제활동을 확대시키는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근로의욕, 저축, 투자 등을 증가시킴으로써 과세소득 및 조세납부액 증가 견인  
→ 최상위 5%가 납부한 전세 납세액 대비 비중은 1981년 35%에서 1990년 44%로 증가

Ex2) 1982~1989년 약 2,000만개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연소득 3만 3,000달러 이상의 전문직종 일자리는 33.1%, 연소득 2만 6,000달러 생산직 일자리는 19%, 연소득 2만 1,000달러 기술직 일자리는 21.8% 증가한 반면, 1만3,000달러의 농업 일자리는 4% 감소

< 표 10 > 레이건 정부의 규제완화 및 감세 정책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세제 개편	- 개인소득에 대한 최고 한계세율 인하(70%→28%) - 법인세율 인하(48%→34%)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면제
규제 완화	- 에너지 산업, 운수업, 통신산업 등에 대한 가격 통제 완화 및 신규업체 시장진입 허용 - 공정거래법 범위 축소 - 안전, 환경 관련 규제 축소 등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레이저노믹스의 성과와 시사점, 2004 ; 민경국, 레이저노믹스의 성공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자유경제원, 2008 ; 삼성경제연구소, 선진국 불황기의 대응과 시사점, 1998; 한국경총 재구성

## ■ 뉴질랜드

### ○ 1990년 전후 고용시장 상황 :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

- (배경) 1972년 영국의 유럽경제공동체(ECC) 가입, 오일쇼크, 노동조합의 막강한 영향력, 과도한 사회복지지출 등으로 인해 1970년대 후반부터 저성장·고물가의 '스테그플레이션' 현상 지속

※ 실질GDP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실질GDP성장률 : ('76~'80년) -0.6 ('81~'85년) 3.2 ('86~'90년) 0.9

- 소비자물가상승률 : ('76~'80년) 14.8 ('81~'85년) 12.1 ('86~'90년)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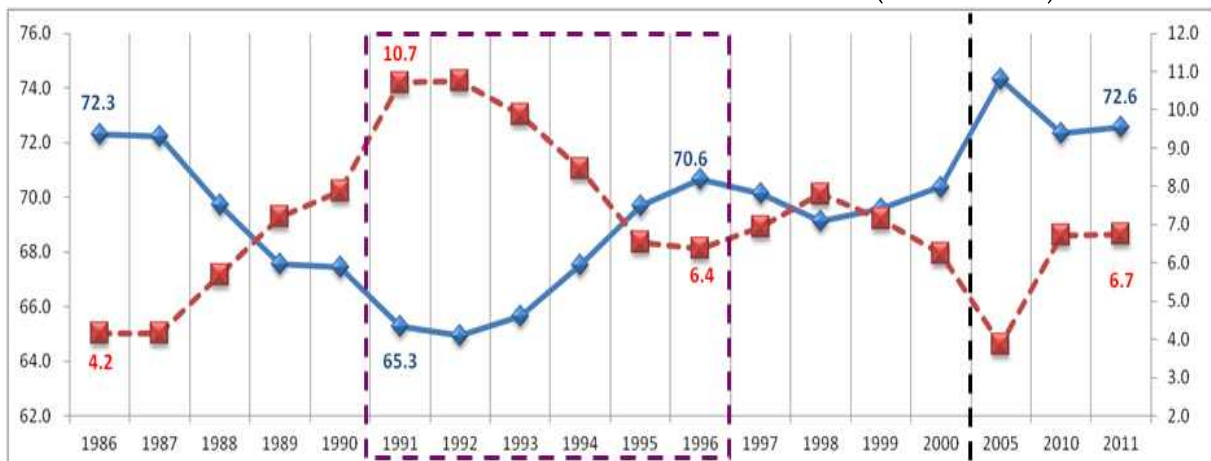
- (1991년 전) 고용률은 1986년 72.3%에서 1991년 65.3%로 7%p 하락하고, 실업률은 1986년 4.2%에서 1991년 10.7%로 6.5%p 상승하면서 노동시장 악화

- (1991~1996년) 1996년 고용률은 70.6%로 1991년 대비 5.4%p 상승, 실업률은 6.4%로 4.3%p 하락

⇒ 1991~1996년 5년간 취업자수는 23만명(15.2%) 증가, 실업자수는 6만명(34.6%) 감소

※ 2011년 취업자수 211만명, 고용률 72.6% ; 실업자수 15만명, 실업률 6.7%

< 그림 8 > 1986년 이후 뉴질랜드의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15~64세, %)



자료 : OECD

○ 노동시장 정책 : 경제구조개혁(1991년 고용계약법 도입)

- (배 경) 1984년 집권한 노동당 랭(D. Lange) 정부가 시작하고 뒤이은 국민당 볼저(J. Bolger) 정부까지 10여년 간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경제 및 고용개혁 추진
- (경제부문 주요내용) 재정, 금융, 산업, 무역 등 경제 전반에 시장원리에 기반으로 한 개혁을 추진했으며, 주요정책으로는 소득세제 개편 및 법인세 인하, 국영기업 민영화, 금리자유화, 해외직접투자 출입 자유화, 관세 폐지 등

< 표 11 > 1980년 이후 뉴질랜드의 경제개혁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통화·물가	- 물가상승률 목표를 교역대상국 수준 이하로 설정
정부 운용	- 산업보조금 지급 등을 정부지출 삭감 - 국영기업의 민영화 - 국영기업 경영자의 책임과 권한 강화 등
법과 제도	- 자유변동환율제도 도입(1985) - 예금 대출금리 규제 철폐(1984) - 대외투자과 차관에 대한 통제 철폐(1984) - 포트폴리오 투자와 이익의 본국송환 자유 허용(1985) -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전면 자유화(1985) - 국영은행 민영화 추진, 우편저축은행 민간 매각(1989)
규제 완화	- 직접투자 관련 규제 철폐(1984) - 통신사업 우편 우편저금 전기통신 3개분야로 분할 민영화 추진 - 산업별, 정부·민간기업별, 수출·내수 기업 별 구분 없이 경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동일 기준에 의해 규제(1986)
세제 개혁	- 소득세 3단계로 단순화, 법인세 48%로 단순화(1985) - 소득세 2단계로 단순화, 법인세 28%로 인하(1988) -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 간접세 폐지(1991, 1992) 등

- (고용부문 주요내용) 중앙집권적 노사관계, 노조의무가입, 과도한 사회복지 등이 경제의 활력을 잃게 만들었다는 인식 하에 '고용계약법(The employment Contracts Act, ECA)'을 도입하고 근로유인형 실업보험체계 구축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

\* 노동시장 개혁 이전 노사관계: 근로자는 고용된 후 14일 이내에 노조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직종별로 특정 노동조합이 독점적인 교섭권을 보유하며 체결된 단체협약은 해당 직종의 모든 기업에게 포괄적용, 노사분규 발생시 의무적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중재법정에서 해결

- 고용계약법의 주요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자유로운 고용계약 체결, 노동조합 의무가입 규정 폐지, 산업별·직종별 파업 금지, 노동조합의 독점적 교섭권 폐지, 단체협약의 포괄적 적용 폐지 등으로 **중앙집권적 노사관계를 분권적인 노사관계로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

⇒ 1991년 고용계약법 도입은 노동시장 개혁이 198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3차 개혁에 해당하는 것으로, 1980년대 초 1차 노동시장 개혁, 1980년대 중후반 2차 노동시장 개혁은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

- (시행효과) 중앙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고용계약이 개인 또는 기업 단위로 바뀌면서 **노조의 세력 약화, 노사분규 감소, 임금상승률 하락, 근로형태 다양화 등이 나타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뉴질랜드 노동시장 개혁 내용은 ▲김용원, 뉴질랜드의 고용개혁과 시사점 - 2000년 고용관계법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007 ; 박동운, 뉴질랜드의 노동개혁과 한국에의 시사점, 2007, 유병남, 뉴질랜드 고용 개혁 및 교훈, 1998을 중심으로 요약

< 표 12 > 1980년 이후 뉴질랜드의 노동시장 개혁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1차 노동시장 개혁 (1980년대 초)	- 근로자의 의무적 노조가입조항 폐지 - 중재법정에 의한 강제중재조항 폐지
2차 노동시장 개혁 (1984~90년, 노동당)	- <b>1987년 노사관계법 제정</b> ① 등록된 노조는 1,000명 이상의 조합원 확보해야함 ② 개별기업에서 노사가 임금협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전국적인 협약임금 준수의무를 면제 가능 ③ 노사분쟁을 조정하던 중재법정을 3개 기구로 분리 - 1990년 고용평등법 제정 : 고용평등기회 확대, 여성 임금 차별 방지
3차 노동시장 개혁 (1990년~, 국민당)	- <b>경제 사회 개혁안(Economic and Social Initiative, 90.12월)</b> : 사회보장지급 대상 대폭 축소, 재정지출 삭감 - <b>고용계약법(1991.5월) 제정</b> ① 고용계약을 고용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체결 ② 고용계약 내용에 대한 법적 규제가 거의 없음 ③ 노조 의무가입규정 및 독점적 교섭권 폐지 ④ 노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산업별·직종별 파업할 수 없음. ⑤ 분쟁조정이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함. ⑥ 단체 협약의 포괄적 적용 폐지 - <b>실업보험 수혜조건 강화, 지급액 감축</b> ① 실업자가 근로의욕을 나타내지 않으면 <b>실업보조금 감축</b> ② 실업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10주로 확대 ③ 실업보험 지급액 10% 감축

## ■ 캐나다

### ○ 1980년 전후 고용시장 상황 :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

- (배경)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경기침체를 겪고 있었으며, 1982년 들어서는 마이너스 성장(-2.9%), 높은 인플레이션(10.8%)을 기록하는 등 경제위기에 직면

※ 실질GDP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실질GDP성장률 : ('75년) 1.8 ('80년) 2.2 ('81년) 3.5 ('82년) -2.9 ('83년) 2.7
- 소비자물가상승률 : ('75년) 10.7 ('80년) 10.1 ('81년) 12.5 ('82년) 10.8 ('83년) 5.9

- (1983년 전) 고용률은 1980년 66.1%에서 1983년 63.7%로 2.5%p 하락, 실업률은 1980년 7.6%에서 83년 12.2%로 4.6%p 상승

- (1983~1988년) 1988년 고용률은 70.0%로 1983년 대비 6.3%p 상승, 실업률은 12.2%로 1983년 대비 4.4%p 하락

⇒ 1983~1988년 5년간 취업자수는 168만명(15.5%) 증가, 실업자수는 44만명(29.0%) 감소

※ 2011년 취업자수 1,678만명, 고용률 72.0% ; 실업자수 137만명, 실업률 7.5%

< 그림 9 > 1980년 이후 캐나다의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15~64세, %)



자료 : OECD

○ 노동시장 정책 : 경제회생 아젠다(Agenda for Economic renewal)

- '84년 집권한 진보보수당 정부의 멀로니 총리는 직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탈규제를 통한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정부지출 삭감에 주력
- 멀로니 정권의 사회정책 핵심은 1984.11월에 재무장관 윌슨(M. Wilson)이 발표한 "경제회생 아젠다"로 주요내용은
  - ① 정부의 직접적인 목표는 조세 증가가 아닌 지출 삭감을 통한 재정적자 축소
  - ② 최고의 소득보장책은 일자리이므로 정부지출은 즉각적인 고용기회 확대에 사용
  - ③ 비용이 많이 드는 보편적 사회프로그램 대신 선별주의적 사회프로그램 확대 등
- 특히, 1975년 자유당 트뤼도 총리가 시작한 실업보험 개혁과 (실업자와 노동시장 신규참여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 정책을 차기정권인 보수당 멀로니 정권에서 더욱 확대 시행

< 표 13 > 1970년대 중반~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실업보험 개편과 일자리 창출정책 내용

구분	개혁 내용
실업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보험 단위기간 연장(노동시장 신규참여자와 장기실업자 대상, 실직 전 1년 간 8주 이상 → 실직 전 2년간 40주, 1978)</li> <li>-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삭감(67%→60%→57%, 1979)</li> <li>- 자발적 실업자와 해고자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 자격 3개월 간 제한(1989)</li> <li>- 1989년~1992년까지 실업보험료율 50% 이상 인상(1989)</li> <li>-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저 고용기간 확대(10~14주 → 10~20주, 1990)</li> <li>- 최저고용기간만을 충족한 실업자에 대한 급여수급 최대기간 축소(32주→27주)</li> <li>- 실업급여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 축소</li> </ul>
일자리 창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6년 자유당 정부 : 실업보험에서 절감된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향후 5년간 고용전략 발표</li> <li>- 1983~1984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통합(12개→4개) → 1983~1984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11억 달러가 지출되어 연간 88,100개의 일자리 창출</li> <li>- 1985년 보수당 : 고용창출 정책에 20억 달러 지원</li> </ul>

자료 : 조영훈, 캐나다 복지국가 연구,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25집, 2011

### Ⅲ 노동시장 개혁 정책 이후의 변화와 성과

#### 1. 개 괄(15~64세, OECD통계 기준)

##### ■ 세부형태별 고용증감 분석

- (개 괄) 고용률 70% 달성 전 5년간 고용률 증가는 고용형태별로는 시간제·임시직\*, 성별로는 여성, 연령대별로는 핵심근로인구(24~54세)가 견인

\* OECD는 시간제를 주된 일자리(the main job)에서 주당 30시간 미만 근로하는 형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임시직 분류기준은 p43 첨부 참고

- (전일제·시간제) 6개국에서 전일제, 시간제 근로자가 모두 증가했으며, 미국을 제외한 5개국에서 시간제 근로자 증가율이 전일제 근로자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시간제 근로자가 5년 동안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승

- 고용률 70% 달성 이전 노동시장 유연성이 이미 OECD 최고 수준이었던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OECD 정규직 고용보호법제지수 순위(순위가 높을수록 보호수준이 낮음)

: 미국 1위(1985년), 캐나다 2위(1985년) ; 독일 24위(2005년), 네덜란드 24위(1995년)

< 표 14 > 고용률 70% 달성 전 5년간 취업자수, 전일제·시간제 근로자수 증감 (단위 : 천명)

구 분	분석기간	취업자수 증감(률) < A >	전일제 근로자 증감(율)	시간제 근로자 증감(율) < B >	시간제근로자 고용기여도 < B/A*100 >	시간제근로자 비중 변화 (전체취업자수 대비)
독 일	2003~2008	2,581 (7.3%)	994 (3.8%)	1,079 (17.4%)	41.8%	17.5% → 19.2%
네덜란드	1994~1999	858 (12.8%)	456 (9.8%)	395 (23.8%)	46.0%	24.8% → 27.2%
영 국	1984~1989	2,577 (10.9%)	1,328 (7.4%)	605 (15.3%)	23.5%	16.7% → 17.4%
미 국	1982~1987	12,793 (13.2%)	10,174 (14.2%)	1,032 (8.5%)	8.1%	12.6% → 12.1%
뉴질랜드	1991~1996	227 (15.2%)	120 (12.8%)	56 (23.5%)	24.7%	16.1% → 17.2%
캐 나 다	1983~1988	1,678 (15.5%)	1,198 (15.2%)	267 (18.0%)	15.9%	13.6% → 13.9%

주1 :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임금근로자 기준

주2 : 고용기여도는 분석대상기간동안 전체취업자 증가분에서 시간제 취업자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OECD

○ (상용직·임시직) 독일, 네덜란드는 상용직과 임시직 모두 증가했으며, 전체 취업자수에서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중 상승

- 영국은 상용직이 증가하고 임시직이 감소, 그 외 국가는 분석대상기간 데이터 부재

< 표 15 > 고용률 70% 달성 전 5년간 취업자수, 상용직·임시직 근로자수 증감

(단위 : 천명)

구 분	분석기간	취업자수 증감(률) < A >	상용직 근로자 증감(율)	임시직 근로자 증감(율) < B >	임시직근로자 고용기여도 < B/A*100 >	임시직근로자 비중 변화 (전체취업자수 대비)
독 일	2003~2008	2,581 (7.3%)	1,060 (3.8%)	1,121 (29.1%)	43.4%	10.9% → 13.1%
네덜란드	1994~1999	858 (12.8%)	689 (13.2%)	167 (26.4%)	19.4%	9.4% → 10.6%
영 국	1984~1989	2,577 (10.9%)	1,858 (11.0%)	-98 (-8.4%)	-3.8%	5.0% → 4.1%

주1 :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는 임금근로자 기준

주2 : 고용기여도는 분석대상기간동안 전체취업자 증가분에서 시간제 취업자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OECD

○ (성 별) 6개국에서 남성, 여성 근로자 모두 증가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 취업자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전체 취업자 대비 여성근로자 비중 상승

-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캐나다 등 5개국에서 남성보다 여성 취업자의 증가규모, 증가율, 전체 취업자 증감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이 높게 나타남.

- 뉴질랜드는 5년간 남성이 여성보다 2천명 더 증가했으나, 5년 간 여성취업자 증가율이 전체 취업자 증가율보다 높아 전체 취업자 대비 여성 취업자 비중은 상승

< 표 16 > 고용률 70% 달성 전 5년간 취업자수, 성별 근로자수 증감

(단위 : 천명)

구 분	분석기간	취업자수 증감(률)	남성 취업자 증감(율)	여성 취업자 증감(율)	여성근로자 비중 변화 (전체취업자수 대비)
독 일	2003~2008	2,581 (7.3%)	1,287 (6.6%)	1,294 (8.1%)	45.1% → 45.4%
네덜란드	1994~1999	858 (12.8%)	356 (8.9%)	502 (18.5%)	40.5% → 42.6%
영 국	1984~1989	2,577 (10.9%)	1,074 (7.8%)	1,502 (15.4%)	41.5% → 43.1%
미 국	1982~1987	12,793 (13.2%)	5,760 (10.6%)	7,033 (16.7%)	43.6% → 44.9%
뉴질랜드	1991~1996	227 (15.2%)	114 (13.8%)	112 (17.0%)	44.3% → 45.0%
캐 나 다	1983~1988	1,678 (15.5%)	759 (12.0%)	920 (20.2%)	42.0% → 42.7%

자료 : OECD

- (연령별) 5년 간 영국 장년층과 미국 청년층 외에 6개국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취업자수가 증가했으며, 독일을 제외한 5개국에서 핵심근로인구(25~54세)가 취업자수 증가를 견인

- 단순 취업자수 증가율을 보면, 독일의 청년층과 장년층, 뉴질랜드의 장년층이 핵심 근로인구의 증가율보다 높았음.

< 표 17 > 고용률 70% 달성 전 5년간 취업자수, 연령별 근로자수 증감

(단위 : 천명)

구 분	분석 기간	취업자수 증감(률)	청년층 증감(율)	핵심근로인구 증감(율)	장년층 증감(율)	핵심근로인구 비중변화 (취업자수 대비)
독 일	2003~2008	2,581 (7.3%)	630 (16.4%)	890 (3.2%)	1,061 (25.5%)	77.4% → 74.5%
네덜란드	1994~1999	858 (12.8%)	56 (4.8%)	676 (13.2%)	126 (30.4%)	76.4% → 76.7%
영 국	1984~1989	2,577 (10.9%)	586 (11.8%)	2,167 (13.9%)	-176 (-5.9%)	66.2% → 67.9%
미 국	1982~1987	12,793 (13.2%)	-76 (-0.4%)	12,819 (19.7%)	50 (0.4%)	67.2% → 71.1%
뉴질랜드	1991~1996	227 (15.2%)	11 (3.7%)	174 (16.4%)	42 (34.7%)	71.1% → 71.9%
캐 나 다	1983~1988	1,678 (15.5%)	46 (1.8%)	1,587 (21.8%)	46 (4.3%)	67.2% → 70.8%

자료 : OECD

## ■ 시간제 근로자와 근로시간 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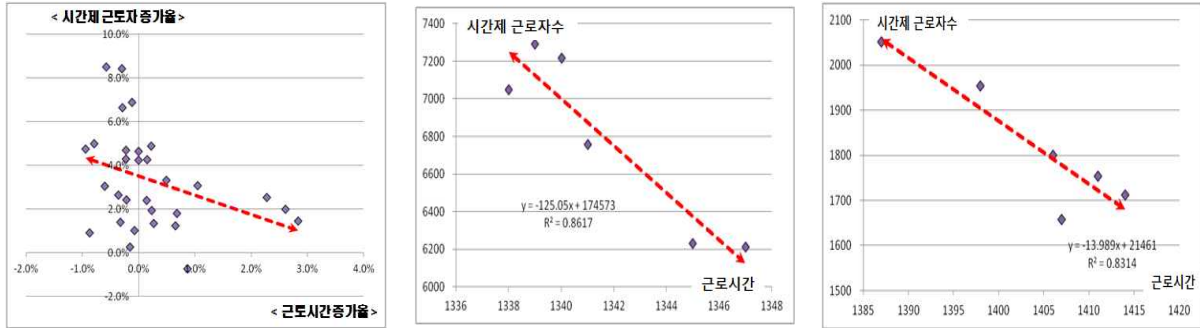
- (증가율) 5년간 전년대비 시간제 근로자 증감률과 근로시간 증감율 간에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제 근로자 증가율이 높아질수록, 근로시간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추 이) 5년간 시간제 근로자 증가가 고용률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큰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 근로시간이 감소했으며, 시간제 근로자와 근로시간 간에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면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5년간 시간제 근로자 증가분이 전체 취업자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 : 독일 41.8%, 네덜란드 46.0%, 영국, 23.5%, 미국 8.1%, 뉴질랜드 24.7%, 캐나다 15.9%

- 독일-네덜란드를 제외한 4개국에서 분석대상기간동안 근로시간이 증가하여, 시간제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 간의 상관관계는 불명확

< 그림 10 > 고용률 70% 달성 전 5년간 시간제근로자와 근로시간 간 관계  
 < 6개국 증감을 분석 > < 독일 시계열 > < 네덜란드 시계열 >



자료 : OECD

## 2. 국가별 노동시장 변화 분석

### 1) 독일(2003~2008년)

#### ■ 고용률과 근로시간 변화

- (고용률) 15~64세 기준 고용률은 2003년 64.6%에서 2008년 70.2%로 5.6%p 상승
  - 생산가능인구 : 2003년 5,482만명 → 2008년 5,417만명, 65만명(1.2%) 감소
  - 취업자수 : 2003년 3,542만명 → 2008년 3,800만명, 258만명(7.3%) 증가
  - 고용률 증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1.2%)보다 취업자수 증가(7.3%)가 견인
- (근로시간)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03년 1,347시간에서 2008년 1,339시간으로 0.6%(8시간) 감소

< 표 18 > 2003~2008년 5년 간 독일의 고용률, 근로시간 변화

구 분	2003년	2008년	2003년 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율
생산가능인구(A)	54,819천명	54,166천명	-653천명 (-1.2%)	-0.2%
취업자수(B)	35,422천명	38,003천명	2,581천명 (7.3%)	1.4%
고용률 (B/A*100)	64.6%	70.2%	5.6%p	-
연평균 근로시간 (임금근로자)	1,347시간	1,339시간	-0.6%	-

자료 : OECD

## ■ 세부형태별 고용변화 분석

### ○ (고용형태별) 5년간 전체 취업자 가운데 시간제와 임시직 비중이 높아짐

#### ① (전일제, 시간제) 5년간 전일제(Full-time) 근로자보다 시간제(Part-time) 근로자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전체 취업자 대비 시간제 비중 상승

- (5년간 증감) 전일제는 99만 4천명, 시간제는 107만 9천명 증가
- (5년 전 대비 증가율) 전일제는 3.8%, 시간제는 17.4% 증가
- (고용기여도, 취업자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일제는 38.5%, 시간제는 41.8%
- (전체 취업자수 대비 비중) 전일제는 71.8%에서 69.6%로 2.2%p 감소, 시간제는 17.5%에서 19.2%로 1.7%p 증가

#### ② (상용직, 임시직) 5년간 상용직(Permanent) 근로자보다 임시직(Temporary) 근로자의 증가규모, 증가율, 고용기여도가 높게 나타남.

- (5년간 증감) 상용직은 106만명, 임시직은 112만 1천명 증가
- (5년 전 대비 증가율) 상용직은 3.8%, 임시직은 29.1% 증가
- (고용기여도, 취업자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용직은 41.1%, 임시직은 43.4%
- (전체 취업자수 대비 비중) 상용직은 78.0%에서 75.4%로 2.6%p 감소, 임시직은 10.9%에서 13.1%로 2.2%p 증가

< 표 19 > 2003~2008년 5년간 고용형태별 취업자수 변화 분석

(단위 : 천명)

구 분	취업자수 변 화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5년간 취업자수 증감(률)	고용기여도
	'03년	'08년	'03년	'08년	'03~'08년	
전일제	25,442	26,435	71.8%	69.6%	994 (3.8%)	38.5%
시간제	6,214	7,293	17.5%	19.2%	1,079 (17.4%)	41.8%
상용직	27,612	28,672	78.0%	75.4%	1,060 (3.8%)	41.1%
임시직	3,854	4,975	10.9%	13.1%	1,121 (29.1%)	43.4%

자료 : OECD

○ (성 별) 남성보다 여성 취업자의 증가규모, 증가율, 고용기여도가 높게 나타나 전체 취업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상승

- (5년간 증감) 남성은 128만 7천명, 여성은 129만 4천명 증가
- (5년 전 대비 증가율) 남성은 6.6%, 여성은 8.1% 증가
- (고용기여도, 취업자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 남성은 49.9%, 여성은 50.1%
- (전체 취업자수 대비 비중) 남성은 54.9%에서 54.6%로 0.3%p 감소했으나, 여성은 45.1%에서 45.4%로 0.3%p 증가

○ (연령별) 15~64세 전 연령층에 취업자수가 증가했으며, 타 국가들에 비해 청년층과 장년층의 고용기여도가 높음

※ 청년층 : 15~24세, 핵심근로인구 : 25~54세, 장년층 : 55~64세

- (5년간 증감) 청년층은 63만명, 핵심근로인구는 89만명, 장년층은 106만 1명 증가
- (5년 전 대비 증가율) 청년층은 16.4%, 핵심근로인구는 3.2%, 장년층은 25.5% 증가
- (고용기여도, 취업자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 청년층은 24.4%, 핵심근로인구 34.5%, 장년층 41.1%
- (전체 취업자수 대비 비중) 청년층은 10.9%에서 11.8%로 0.9%p, 핵심근로인구는 77.4%에서 74.5%p로 1.9%p 증가, 장년층은 11.8%에서 13.7%로 1.9%p 증가

< 표 20 > 2003~2008년 5년간 성별, 연령별 취업자수 변화 분석

(단위 : 천명)

구 분		취업자수 변화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5년간 취업자수 증감(률)		고용기여도
		'03년	'08년	'03년	'08년	'03~'08년		
성 별	남성	19,444	→ 20,731	54.9%	→ 54.6%	1,287	(6.6%)	49.9%
	여성	15,978	→ 17,272	45.1%	→ 45.4%	1,294	(8.1%)	50.1%
연 령 별	청년층	3,848	→ 4,478	10.9%	→ 11.8%	630	(16.4%)	24.4%
	핵심 근로 인구	27,411	→ 28,301	77.4%	→ 74.5%	890	(3.2%)	34.5%
	장년층	4,163	→ 5,224	11.8%	→ 13.7%	1,061	(25.5%)	41.1%

자료 : OECD

< 참고 2 > 독일 연방통계청 기준 2003~2008년 5년간 고용형태별 근로자수 증감 분석

- (취업자수) 2003년 3,277만 2천명 → 2008년 3,473만 4천명, 196만 2천명(5.6%) 증가
  - (임금근로자) 2003년 2,896만 3천명 → 2008년 3,065만명, 168만 7천명(5.8%) 증가
- (고용형태별 증감) 2003~2008년 5년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증가했으나, 비정규직 증가율이 25.9%로 정규직 증가율 0.4%에 비해 25.5%p 높음.
  - (정규직) 2003년 2,282만 8천명 → 2008년 2,292만 9천명, 10만 1천명(0.4%) 증가
  - (비정규직) 2003년 613만 5천명 → 2008년 772만 1천명, 158만 6천명(25.9%) 증가
- 비정규직 세부 형태별 취업자수 변화
  - (기간제) 2003년 196만 9천명 → 2008년 273만 1천명, 76만 2천명(38.7%) 증가
  - (시간제) 2003년 442만 1천명 → 2008년 490만 3천명, 48만 2천명(10.9%) 증가
  - (미니잡 등 한계) 2003년 194만 9천명 → 2008년 257만 8천명, 62만 9천명(32.3%) 증가
- 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별 고용기여도
  - 비정규직근로자 증가분은 5년간 취업자수 증가분의 80.8%로, 세부형태별로는 기간제 38.8%, 시간제 24.6%, 미니잡 등 한계 32.1%

< 표 > 2003~2008년 5년간 고용형태별 근로자수 증감 변화 분석

(단위 : 천명)

구 분	취업자수 변화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5년간 취업자수 증감(률)		고용기여도
	'03년	'08년	'03년	'08년	'03~'08년		
정규직	22,828	→ 22,929	69.7%	→ 66.0%	101	(5.1%)	5.1%
비정규직	6,135	→ 7,721	18.7%	→ 22.2%	1,586	(25.9%)	80.8%
기간제	1,969	2,731	6.0%	→ 7.9%	762	(38.7%)	38.8%
시간제	4,421	4,903	13.5%	→ 14.1%	482	(10.9%)	24.6%
한 계	1,949	→ 2,578	5.9%	→ 7.4%	629	(32.3%)	32.1%

주 1. 비정규직 전체는 atypical employment, 기간제 근로자는 fixed-term employee, 시간제는 20시간 미만 part-time employee, 한계는 marginally employed person으로 월 400유로 미만의 저임금 또는 연 50일 또는 2달 미만의 단기 일자리를 번역 (파견, temporary work agency employee는 2006년부터 집계되어 분석과정에서 배제)  
 2. 15~64세 기준 ; 재학생, 견습생, 군복무인원 제외  
 3. 독일의 특수한 고용형태인 미니잡, 미디잡으로 인해 국제통계가 아닌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 활용  
 자료 : 독일 연방통계청 제공, 한국경제총 재구성

## 2 네덜란드

### ■ 고용률과 근로시간 변화

- (고용률) 15~64세 기준 고용률은 1994년 63.9%에서 1999년 70.8%로 5년간 6.9%p 상승
  - 생산가능인구 : 1994년 1,047만명 → 1999년 1,066만명, 19만명(1.8%) 증가
  - 취업자수 : 1994년 670만명 → 1999년 755만명, 86만명(12.8%) 증가
  - 고용률은 취업자 증가(12.8%)가 생산가능인구 증가(1.8%)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상승
- (근로시간)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94년 1,407시간에서 1999년 1,387시간으로 1.4%(20시간) 감소

< 표 21 > 1994~1999년 5년간 고용률, 근로시간 변화

구 분	1994년	1999년	1994년	연평균 증감율
			대비 증감(률)	
생산가능인구(A)	10,471천명	10,664천명	193천명 (1.8%)	0.4%
취업자수(B)	6,695천명	7,553천명	858천명 (12.8%)	2.4%
고용률 (B/A*100)	63.9%	70.8%	6.9%p	-
연평균 근로시간 (임금근로자)	1,407시간	1,387시간	-1.4%	-

자료 : OECD

### ■ 세부형태별 고용변화 분석

- (고용형태별) 5년간 전체 취업자 가운데 시간제와 임시직 비중이 높아짐
  - ① (전일제, 시간제) 5년간 전일제(Full time) 근로자보다 시간제(Part-time) 근로자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전체 취업자 대비 시간제 비중 상승

- (5년간 증감) 전일제는 45만 6천명, 시간제는 39만 5천명 증가
- (5년 전 대비 증가율) 전일제는 9.8%, 시간제는 23.8% 증가
- (고용기여도, 취업자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일제는 53.2%, 시간제는 46.0%
- (전체 취업자수 대비 비중) 전일제는 62.7%에서 61.7%로 1.0%p 감소, 시간제는 24.8%에서 27.2%로 2.4%p 상승

② (상용직, 임시직) 5년간 상용직(Permanent) 근로자보다 임시직(Temporary) 근로자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전체 취업자수 대비 임시직 비중 상승

- (5년간 증감) 상용직은 68만 9천명, 임시직은 16만 7천명 증가
- (5년 전 대비 증가율) 상용직은 13.2%, 임시직은 26.4% 증가
- (고용기여도, 취업자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용직은 80.3%, 임시직은 19.4%
- (전체 취업자수 대비 비중) 상용직은 78.1%에서 78.3%로 0.2% 증가하여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임시직은 9.4%에서 10.6%로 1.2%p 증가

< 표 22 > 1994~1999년 5년간 고용형태별 취업자수 변화 분석

(단위 : 천명)

구 분	취업자수 변 화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5년간 취업자수 증감(률)		고용기여도
	'94년	'99년	'94년	'99년	'94~'99년		
전일제	4,200 →	4,657	62.7% →	61.7%	456	9.8%	53.2%
시간제	1,658 →	2,053	24.8% →	27.2%	395	23.8%	46.0%
상용직	5,227 →	5,916	78.1% →	78.3%	689	13.2%	80.3%
임시직	632 →	798	9.4% →	10.6%	167	26.4%	19.4%

자료 : OECD

- (성 별) 남성보다 여성 취업자의 증가규모, 증가율, 고용기여도가 높게 나타나 전체 취업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상승
  - (5년간 증감) 남성은 35만 6천명, 여성은 50만 2천명 증가
  - (5년 전 대비 증가율) 남성은 8.9%, 여성은 18.5% 증가
  - (고용기여도, 취업자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 남성은 41.5%, 여성은 58.5%
  - (전체 취업자수 대비 비중) 남성은 59.5%에서 57.4%로 2.1%p 감소한 반면, 여성은 40.5%에서 42.6%로 2.1%p 증가
  
- (연령별) 15~64세 전 연령층에 취업자수가 증가했으며, 핵심근로인구의 고용기여도가 높음.

※ 청년층 : 15~24세, 핵심근로인구 : 25~54세, 장년층 : 55~64세

- (5년간 증감) 청년층은 5만 6천명, 핵심근로인구는 67만 6천명, 장년층은 12만 6천명 증가
- (5년 전 대비 증가율) 청년층은 4.8%, 핵심근로인구는 13.2%, 장년층은 30.4% 증가
- (고용기여도, 취업자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 청년층은 6.5%, 핵심근로인구는 78.8%, 장년층은 6.5%
- (전체 취업자수 대비 비중) 청년층은 10.9%에서 11.8%로 0.9%p, 핵심근로인구는 77.4%에서 74.5%p로 2.9%p 증가, 장년층은 11.8%에서 13.7%로 1.9%p 증가

< 표 23 > 1994~1999년 5년간 성별, 연령별 취업자수 변화 분석

(단위 : 천명)

구 분	취업자수 변화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5년간 취업자수 증감(률)		고용기여도
	'94년	'99년	'94년	'99년	'94~'99년		
성 별	남성	3,981 → 4,337	59.5% → 57.4%		356 (8.9%)	41.5%	
	여성	2,714 → 3,216	40.5% → 42.6%		502 (18.5%)	58.5%	
연 령 별	청년층	1,163 → 1,219	17.4% → 16.1%		56 (4.8%)	16.1%	
	핵심근로인구	5,118 → 5,794	76.4% → 76.7%		676 (13.2%)	76.7%	
	장년층	414 → 540	6.2% → 7.1%		126 (30.4%)	7.1%	

자료 : OECD

### ③ 영 국

#### ■ 고용률과 근로시간 변화

- (고용률) 15~64세 기준 고용률은 1984년 65.4%에서 1989년 72.0%로 5년간 6.6%p 상승
  - 생산가능인구 : 1984년 3,576만명 → 1999년 3,632만명, 56만명(1.6%) 증가
  - 취 업 자 수 : 1984년 2,358만명 → 1989년 2,616만명, 258만명(10.9%) 증가
  - 고용률은 취업자수 증가(10.9%)가 생산가능인구 증가(1.6%)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상승
- (근로시간)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84년 1,407시간에서 1989년 1,387시간으로 3.1%(51시간) 증가

< 표 24 > 1984~1989년 5년간 고용률, 근로시간 변화

구분	1984년	1989년	1984년 대비	연평균 증감율
			증감(률)	
생산가능인구(A)	35,760천명	36,322천명	560천명 (1.6%)	0.3%
취업자수(B)	23,578천명	26,155천명	2,577천명 (10.9%)	2.1%
고용률 (B/A*100)	65.4%	72.0%	6.6%p	-
연평균 근로시간 (임금근로자)	1,664시간	1,715시간	3.1%	-

자료 : OECD

#### ■ 세부형태별 고용변화 분석

- (고용형태별) 5년간 전체 취업자 가운데 시간제,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아짐.
  - ① (전일제, 시간제) 5년간 전일제(Full time) 근로자보다 시간제(Part-time) 근로자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전체 취업자 대비 시간제 비중 상승

- (5년간 증감) 전일제는 132만 8천명, 시간제는 60만 5천명 증가
- (5년 전 대비 증가율) 전일제는 7.4%, 시간제는 15.3% 증가
- (고용기여도, 취업자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일제는 51.5%, 시간제는 23.5%
- (전체 취업자수 대비 비중) 전일제는 70.2%에서 68.4%로 1.8%p 감소, 시간제는 16.7%에서 17.4%로 0.7%p 상승

② (상용직, 임시직) 5년간 임시직(Temporary) 근로자는 감소하고 상용직(Permanent) 근로자의 전체 취업자수 대비 비중은 소폭 증가

- (5년간 증감) 상용직은 185만 8천명 증가, 임시직은 9만 8천명 감소
- (5년 전 대비 증가율) 상용직은 11.0% 증가, 임시직은 8.4% 감소
- (고용기여도, 취업자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용직은 72.1%, 임시직은 -3.8%
- (전체 취업자수 대비 비중) 상용직은 71.6%에서 71.7%로 0.1%p 상승, 임시직은 5.0%에서 4.1%로 0.9%p 감소

< 표 25 > 1984~1989년 5년간 고용형태별 취업자수 변화 분석

(단위 : 천명)

구 분	취업자수 변 화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5년간 취업자수 증감(률)		고용기여도
	'84년	'89년	'84년	'89년	'84~'89년		
전일제	16,562	→ 17,890	70.2%	→ 68.4%	1,328	(7.4%)	51.5%
시간제	3,949	→ 4,553	16.7%	→ 17.4%	605	(15.3%)	23.5%
상용직	16,883	→ 18,741	71.6%	→ 71.7%	1,858	(11.0%)	72.1%
임시직	1,168	→ 1,069	5.0%	→ 4.1%	-98	(-8.4%)	-3.8%

자료 : OECD

- (성 별) 남성보다 여성 취업자의 증가규모, 증가율, 고용기여도가 높게 나타나 전체 취업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상승
  - (5년간 증감) 남성은 107만 4천명, 여성은 150만 2천명 증가
  - (5년 전 대비 증가율) 남성은 7.8%, 여성은 15.4% 증가
  - (고용기여도, 취업자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 남성은 41.7%, 여성은 58.3%
  - (전체 취업자수 대비 비중) 남성은 58.5%에서 56.9%로 1.6%p 감소한 반면, 여성은 41.5%에서 43.1%로 1.6%p 증가
- (연령별) 청년층과 핵심근로인구의 취업자수가 증가한 반면, 장년층 취업자수는 감소했으며, 핵심근로인구의 고용기여도가 높음.

※ 청년층 : 15~24세, 핵심근로인구 : 25~54세, 장년층 : 55~64세

- (5년간 증감) 청년층과 핵심근로인구는 각각 58만 6천명, 216만 7천명 증가, 장년층은 17만 6천명 감소
- (5년 전 대비 증가율) 청년층과 핵심근로인구는 각각 11.8%, 13.9% 증가, 장년층은 5.9% 감소
- (고용기여도, 취업자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 청년층은 22.7%, 핵심근로인구는 84.1%, 장년층은 -6.8%
- (전체 취업자수 대비 비중) 청년층은 21.1%에서 21.3%로 0.2%p, 핵심근로인구는 66.2%에서 67.9%로 1.9%p 증가, 장년층은 11.8%에서 13.7%로 1.9%p 증가

< 표 26 > 1984~1989년 5년간 성별, 연령별 취업자수 변화 분석

(단위 : 천명)

구 분	취업자수 변 화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5년간 취업자수 증감(률)		고용기여도
	'84년	'89년	'84년	'89년	'84~'89년		
성 별	남성	13,803 → 14,877	58.5% → 56.9%		1,074 (7.8%)		41.7%
	여성	9,775 → 11,277	41.5% → 43.1%		1,502 (15.4%)		58.3%
연 령 별	청년층	4,979 → 5,565	21.1% → 21.3%		586 (11.8%)		22.7%
	핵심 근로 인구	15,603 → 17,769	66.2% → 67.9%		2,167 (13.8%)		84.1%
	장년층	2,996 → 2,820	12.7% → 10.8%		-176 (-5.9%)		-6.8%

자료 : OECD

#### 4 그 외 국가(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 ■ 고용률과 근로시간 변화

- (미 국) 고용률은 1982년 65.8%에서 1987년 70.7%로 5.0%p 상승
  - 취업자수는 1982년 9,661만명에서 1999년 1억 940만명으로 1,279만명(13.2%) 증가
  - 연평균 근로시간(임금근로자 기준)은 1982년 1,808시간에서 1987년 1,831시간으로 23시간(1.3%) 증가
  
- (뉴질랜드) 고용률은 1991년 65.3%에서 1996년 70.6%로 5.4%p 상승
  - 취업자수는 1991년 148만 8천명에서 1996년 171만 4천명으로 22만 7천명(15.2%) 증가
  - 연평균 근로시간은 1991년 1,722시간에서 1996년 1,764시간으로 42시간(2.4%) 증가
  
- (캐나다) 고용률은 1983년 63.7%에서 1988년 70.0%로 6.3%p 상승
  - 취업자수는 1983년 1,086만명에서 1988년 1,254만명으로 168만명(15.5%) 증가
  - 연평균 근로시간은 1983년 1,754시간에서 1988년 1,785시간으로 31시간(1.7%) 증가

< 표 27 > 고용률 70% 달성 전 5년간 고용률, 취업자수 근로시간 변화

(단위 : %, 천명, 시간)

구 분 (기 간)	고용률 변화 <증감>	취업자수 변화 <증감, 증감률>	근로시간 변화 <증감, 증감률>
미 국 (1982~1987년)	65.8 → 70.7 < 5.0%p >	96,606 → 109,399 < 12,793, 13.2% >	1,808 → 1,831 (23, 1.3%)
뉴질랜드 (1991~1996년)	65.3 → 70.6 < 5.4%p >	1,488 → 1,714 < 227, 15.2% >	1,722 → 1,764 (42, 2.4%)
캐나다 (1983~1988년)	63.7 → 70.0 < 6.3%p >	10,857 → 12,535 < 1,678, 15.5% >	1,754 → 1,785 (31, 1.7%)

자료 : OECD

## ■ 세부형태별 고용변화 분석

- (고용형태별) 5년동안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전일제, 시간제 근로자가 모두 증가했으며,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전체취업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 비중 확대

※ OECD의 상용직 임시직 통계에는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의 고용률 70% 달성 전 5년 간의 수치가 없기 때문에 관련 분석 제외

- (미 국) 전일제, 시간제 모두 증가했으며, 전일제 근로자의 증가율이 시간제 근로자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전체 취업자 대비 전일제 근로자 비중 상승

※ 미국 고용형태별 근로자수 증감(임금근로자 기준)

- 전일제 : ('82년) 7,175만 8천명 → ('87년) 8,193만 2천명, 1,017만 4천명(14.2%) 증가
- 시간제 : ('82년) 1,218만 9천명 → ('87년) 1,322만 1천명, 103만 2천명( 8.5%) 증가

- (뉴질랜드) 전일제, 시간제 모두 증가했으며,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율이 전일제 근로자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전체 취업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 비중 상승

※ 뉴질랜드 고용형태별 근로자수 증감(임금근로자 기준)

- 전일제 : ('91년) 93만 9천명 → ('96년) 105만 9천명, 12만명(12.8%) 증가
- 시간제 : ('91년) 23만 9천명 → ('96년) 29만 5천명, 5만 6천명(23.5%) 증가

- (캐 나 다) 전일제 시간제 모두 증가했으며, 시간제 근로자 증가율이 전일제 근로자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전체 취업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 비중 상승

※ 캐나다 고용형태별 근로자수 증감(임금근로자 기준)

- 전일제 : ('83년) 789만 5천명 → ('88년) 909만 3천명, 119만 8천명(15.2%) 증가
- 시간제 : ('83년) 148만명 → ('88년) 174만 7천명, 26만 7천명(18.0%) 증가

< 표 28 > 고용률 70% 달성 전 5년간 취업자수, 전일제·시간제 근로자수 증감  
(단위 : 천명)

구 분	분석 기간	취업자수 증감(률)	전일제 근로자 증감(율)	시간제 근로자 증감(율)	시간제근로자 비중 변화 (전체취업자수 대비)
미 국	1982~1987	12,793 (13.2%)	10,174 (14.2%)	1,032 (8.5%)	12.6% → 12.1%
뉴질랜드	1991~1996	227 (15.2%)	120 (12.8%)	56 (23.5%)	16.1% → 17.2%
캐 나 다	1983~1988	1,678 (15.5%)	1,198 (15.2%)	267 (18.0%)	13.6% → 13.9%

주 :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임금근로자 기준, 자료 : OECD

- (성 별) 5년 동안 남성과 여성 취업자수가 모두 증가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취업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전체 취업자 대비 여성취업자 비중 상승
  - (미국, 캐나다) 여성 취업자가 남성취업자보다 많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상승
  - (뉴질랜드) 남성 취업자에 비해 여성 취업자수 증가분이 작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증가율은 높게 나타나면서 전체 취업자 대비 여성취업자 비중 상승

< 표 29 > 고용률 70% 달성 전 5년간 취업자수, 성별 근로자수 증감 (단위 : 천명)

구 분	분석 기간	취업자수 증감(률)	남성 취업자 증감(율)	여성 취업자 증감(율)	여성근로자 비중 변화 (전체취업자수 대비)
미 국	1982~1987	12,793 (13.2%)	5,760 (10.6%)	7,033 (16.7%)	43.6% → 44.9%
뉴질랜드	1991~1996	227 (15.2%)	114 (13.8%)	112 (17.0%)	44.3% → 45.0%
캐 나 다	1983~1988	1,678 (15.5%)	759 (12.0%)	920 (20.2%)	42.0% → 42.7%

자료 : OECD

- (연령별)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15~64세 전연령층에서 취업자수가 증가했으며, 전 국가에서 핵심근로인구의 고용기여도\*가 높게 나타남.

※ 고용률 달성 5년간 취업자수 증가분에서 해당 연령층 취업자수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  
: 미국 71.1%, 뉴질랜드 76.6%, 캐나다 70.8%

- 미국은 청년층 취업자수는 감소했으나 핵심근로인구, 장년층 취업자수는 증가 하면서 전체 취업자수가 증가했으며, 핵심근로인구의 고용기여도가 높음.

< 표 30 > 고용률 70% 달성 전 5년간 취업자수, 연령별 근로자수 증감 (단위 : 천명)

구 분	분석 기간	취업자수 증감(률)	청년층 증감(율)	핵심근로인구 증감(율)	장년층 증감(율)
미 국	1982~1987	12,793 (13.2%)	-76 (-0.4%)	12,819 (19.7%)	50 (0.4%)
뉴질랜드	1991~1996	227 (15.2%)	11 (3.7%)	174 (16.4%)	42 (34.7%)
캐 나 다	1983~1988	1,678 (15.5%)	46 (1.8%)	1,587 (21.8%)	46 (4.3%)

자료 : OECD

< 참고 3 > OECD 임시직 근로자와 우리나라 비정규직 분류방식

- (OECD) OECD는 통상 임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 (e-나라지표, 비정규직의 개념 및 정의)
  - 임시직근로자는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
- (우리나라) 2002.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을 고려한 비정규직 분류기준에 합의
  -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 시간제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이 해당
    - ① (한시적근로자, 고용의 지속성)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 ② (시간제근로자,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 ③ (비전형근로자, 근로제공 방식) 파견·용역 근로자, 특수고용 종사자, 가정내 근로자(재택,가내), 일일(호출)근로자
  - OECD 임시직 근로자와 달리 '고용의 한시성'에 의한 분류가 아니므로 용역, 특고, 가정내 근로까지 비정규직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모든 시간제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구분

< 표 >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범위와 OECD의 임시직 범위의 차이

고용형태	한국의 비정규직 범위	OECD의 임시직 범위
① 한시적	○	
- 기간제	○	○
- 단기기대+반복갱신	○	○
② 시간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만 포함
③ 비전형	○	
- 파견	○	○
- 용역	○	×
- 특수고용	○	×
- 가정내	○	×
- 일일(단기)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OECD의 임시직 개념과 각 국의 규제내용, 국제노동브리프 2011년 7월호, 2011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6개 국가들의 고용률 70% 달성 주요 성공요인은 정치 논리가 아닌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경제 정책 수립과 노동시장 개혁

- 이는 투자 활성화,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경제주체의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사자율원칙 확립 등이 경제 전체의 일자리 창출여력을 제고 시키고 경제 주체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를 위한 유인을 제공했기 때문임.
- 또한, 노동시장 개혁이 고용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경기침체, 실업 증가 등 단기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포퓰리즘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존재
- 구체적인 시장경제 정책과 노동시장 개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① 해고보호 완화, 비정규직 고용규제 완화, 고용형태 다양화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유연화

- (독 일) 해고보호조항 적용대상 축소, 해고절차 단순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규제 완화 등
- (네덜란드) 해고통지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기간제 고용규제 완화 등
- (영 국) 고용보호법 적용대상자 축소, 해고정당성 입증 관련 규제 완화 등

② 기업투자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한 규제 개혁

- (독일, 네덜란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영 국)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행정규제 완화 등
- (미 국) 공공사업부문 규제정비, 공정거래법 범위 축소, 안전·환경 관련 규제 축소 등
- (뉴질랜드) 직접투자 관련 규제 철폐, 해외직접투자 출입 자유화, 경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동일 기준에 의해 규제, 세제 개편 등

### ③ 시장원리에 입각한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 (영 국)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범위 축소, 개별 조합원의 선택의 자유 확대 (클로즈드숍 점진적 철폐),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관련 민주성 확대 등
- (뉴질랜드) 노동조합 의무가입규정 폐지, 산업별·직종별 파업 금지, 노동조합의 독점적 교섭권 폐지, 단체협약의 포괄적용 폐지 등 중앙집권적 노사 관계를 분권적인 노사관계로 전환

### ④ 투자 활성화 및 근로 유인을 위한 법인세, 소득세 등 세부담 경감

- (독 일) 법인세율 인하, 고용보험요율 인하 등
- (네덜란드) 일정수준 이상의 이익을 내는 기업에게 낮은 법인세율 적용, 임금 인상 자제시 근로자 세금부담 하향 조정 등
- (영 국) 투자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인하, 법인세 인하, 소득세율 인하,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 축소 등
- (미 국) 법인세, 개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인하 등
- (뉴질랜드) 소득세 과표구간 단순화, 법인세 인하 간접세 폐지

### ⑤ 실업보험 수혜조건 강화, 지급액 축소, 실업자의 구직노력의무 강화 등 실업보험체계 개편

- (독 일) 실업급여 지급기간 단축, 급여수준 조정, 실업부조와 사회부조 통합 등
- (네덜란드) 보험급여액과 급여기간 단축, 수혜대상 축소 및 수혜기준 강화, 시행 및 감독기관 개편 등
- (영 국) 실업급여 지급대상자 축소, 피보험 단위기간 연장, 실업급여 지급자의 구직활동의무 강화 등
- (뉴질랜드) 실업급여 지급액 축소, 피보험 단위기간 확대, 실업자가 근로의향이 없을시 실업보조금 감축 등
- (캐 나 다) 자발적 실업자와 해고자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자격 제한, 피보험 단위기간 연장,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삭감, 수급을 위한 최저 고용기간 확대 등

### ⑥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고용서비스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 (독 일) 민간고용서비스 규제 완화,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확대 등
- (네덜란드) 직업훈련 강화 및 적극적 인적자원개발 관련 노사정 합의, 민간취업 알선서비스 허용, 복지수당 지급대신 재취업 지원 활성화 등
- (영 국) 사업주 중심의 직업훈련제도 구축, 사용자 중심으로 훈련기구 개편, 청소년·실업자 관련 직업훈련센터 민영화 등
- (캐 나 다)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통합, 직접일자lich출사업 확대 등

■ 고용률 70% 달성 전 5년간 노동시장 변화는 주로 노동시장 개혁이 일자리의 '질(Quality)'과 '양(Quantity)'을 모두 늘려 핵심근로인구는 물론 청년층, 여성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음을 방증

○ 고용률 70% 달성 전 5년간 6개국의 노동시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①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가 고용률 상승을 견인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상승

- 6개국 모두 전일제(Full-time), 시간제(Part-time) 근로자가 증가했으며, 미국을 제외한 5개국에서 전체 취업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상승
- 독일, 네덜란드, 영국은 상용직(Permanent) 근로자수가 증가했으며, 임시직(Temporary) 근로자가 감소한 영국을 제외한 독일, 네덜란드에서는 임시직 근로자도 증가
- 네덜란드와 독일은 임시직 근로자의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상승

② 남성과 여성 취업자수가 모두 증가했으며, 여성 취업자 증가가 고용률 증가 견인

- 뉴질랜드를 제외한 5개국에서 여성 취업자 수 증가폭이 남성 취업자 수 증가폭보다 높음.
- 6개국 모두 여성취업자 증가율이 남성 취업자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취업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상승

③ 청년층(15~24세), 장년층(55~64세)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핵심근로인구(25~54세) 취업자수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나면서 고용률 증가 견인

- 영국 장년층, 미국 청년층 감소를 제외하고 6개국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취업자수 증가
- 장년층 취업자수 증가폭이 제일 컸던 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국에서 핵심근로인구가 고용률 증가를 견인

■ 선진6개국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과 성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노동시장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① 경제 전체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투자 확대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특히,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인 고용률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정규직 일자리를 나눠갖는 ‘제살꺾이떡기(Cannibalization)\*’식이 아니라 기존 인력수요와 관계없이 새로운 일자리, 즉 창조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자기시장 잠식이라고도 하며, 한 기업에서 새로 출시하는 상품으로 인해 그 기업에서 기존에 판매하던 다른 상품의 판매량이나 수익,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

②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해고보호 완화, 고용형태 및 생산방식 다양화 등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해야 함.

③ 정규직 일자리에 비해 고용보호가 약한 비정규직 일자리는 기존 근로자들 보다 근로능력이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통로로 작용하므로 비정규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함.

④ 5년내 고용률 70% 달성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고용형태를 인위적으로 제약하기보다는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효율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활성화가 핵심요소이나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를 부여할 경우 오히려 고용률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음.

- ⑤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은 근로시간 감소로 이어질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법제도 중심의 접근보다는 노동시장 유연화, 생산성 향상 등 시장기능에 중점을 둔 접근이 필요함.
- ⑥ 개별기업의 노사문제는 노사간 자율적 교섭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정부는 '중립적 법집행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형성해야 함.
- ⑦ 비경제활동 상태인 핵심근로인구와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제고시킴으로써 고용률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부담 경감, 근로 연계 복지 구축이 시급함.

끝!

## 참고문헌

- 강신욱, 맞벌이가구의 실태를 통해서 본 맞벌이가구 지원 정책의 필요성, 맞벌이 가구 지원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9
- 김대일, 영국 경제정책과 노사관계의 변화, 위기의 대한민국! 대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7
- 김영세, 대처의 경제개혁 : 부흥과 번영의 해법, 위기의 대한민국! 대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7
- 김용원, 뉴질랜드의 고용개혁과 시사점 - 2000년 「고용관계법」을 중심으로,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17권 제1호(2007년 여름), 2007
- 김인춘, 세계화 시대 북유럽 조합주의의 변화와 혁신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비교분석, 경제와사회 2002년 봄호(통권 제53호), 2002
- 김형진, 대처의 위기 관리 능력, 위기의 대한민국! 대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책 토론회 자료집, 2007
- 고용노동부, 선진국의 노동시장 개혁사례 연구, 2008
- 박동운, 뉴질랜드의 노동개혁과 한국에의 시사점, CFE Report No.5, 2007
- 삼성경제연구소, 미국과 영국의 경제구조조정 사례와 시사점, 2000
- 삼성경제연구소, 선진국 불황기의 대응과 시사점 - 미국·일본 경제를 중심으로 - , 1998
- 박동운, 대처의 노동시장 개혁과 한국에의 시사점, CFE Report No.4, 2006
- 조영훈, 캐나다 복지국가 연구,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25집, 2011
- 메리 힐슨, 노르딕 모델 : 북유럽 복지국가의 꿈과 현실, 2010
- 민경국, 레이저노믹스의 성공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자유기업원 논단, 2008
- 유경준,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KDI FOCUS 통권 제15호, 2012
- 통계청, 2012년 맞벌이 가구통계, 2012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자영업자 가구의 현황 및 특징, 2013
- 황성돈, 대처의 정부혁신 : 의의와 교훈, 위기의 대한민국! 대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7
- 한국경영자총협회, 독일은 글로벌 고용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 - 독일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와 시사점 -, KEF정책 2012-02, 2012
- 한국노동연구원, 네덜란드의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화, 빔 록 네덜란드 전 총리 초청강연 자료집, 2005
- 한국노동연구원, 1만~2만불 시기 선진국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2006

한국노동연구원, 영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책 1945~1997년 - 영국병의 발병과 상처 그리고 치유의 50년사 -, 1997

한국노동연구원, 선진국의 일자리 창출 연구, 1999

한국노동연구원, OECD의 임시직 개념과 각국의 규제내용, 국제노동브리프 2011년 7월호, 2011

한국은행, 경기-고용 간 관계 변화의 구조적 요인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2013

한국은행, 독일의 “Agenda2010” 발표 10주년 관련 주요논평, 2013

한국은행, 한국의 經濟成長과 社會指標의 변화, 금융경제연구, 2012

현대경제연구원,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 -자영업자의 10대 문제, 2012

현대경제연구원, 한국 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 전략 - 4만 달러 도약에 성공한 9개국의 7가지 공통점, 2013

현대경제연구원, 한국 중산층의 구조적 변화 -1990년 이후 소득 및 소비 구조의 변화, 2011

KDI, 미래비전 2040 - 미래사회경제구조 변화와 국가발전전략, 2011

LG경제연구원, 실업률을 반으로 줄인 유럽 3국, 1998

Heritage Foundation, 2013 Index of Economic Freedom, 2013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3;

IMF, Korea’s transition to a knowledge-based economy, 2006

OECD, A framework for growth and social cohesion in Korea, 2011

OECD,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 2012

OECD, Doing Better for families, 2011

OECD, OECD Economic Policy Paper No.3 : Looking to 2060 : A global vision of long-term Growth, 2012

OECD statistic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nemployment statistics from 1881 to the present day, 1996

The World Bank : Data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Worldbank, Doing business 2010, 2009

끝!